

제41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2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2)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3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3)
3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4)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5)
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4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4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4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4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4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4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4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
4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0505)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5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6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67.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68.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69.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70.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71.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72.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73.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7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7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76.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7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7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 상정된 안건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	7
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	7
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	7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	7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	26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	26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26
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33
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	38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	38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	38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	52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	52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	52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	52
16.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	52
17.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	52
18.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	52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74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74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74
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	74
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74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74
2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74
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74
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	74
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	74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2) .....	74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	74
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	74
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	83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	83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	83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	98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	98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	98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	98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	98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	98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98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98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98
5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	98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	98
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	98
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	98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	98
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	98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	99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저는 오늘 법안소위를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상임위라든지 또 국정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마는, 특히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저는 관련 법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서에는 충분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또 간사님에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농지법이 11월 달의 소위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따로 드렸는데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내용에 포함되지도 못한 사항을 보고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저도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지법 심사 요청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원래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법안 심사를 월 2회를 열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앞뒤로 일정을 좀 조정하자 이런 거였고요.

제가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그때 농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안이 아직 성안이 좀 안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28일 이쪽저쪽에 또 법안소위가 잡힐 텐데 그때 준비가 되면 상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체 이유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위원님들 간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심사를 반드시 해서 공감하는 건 공감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견해 차이가 있다면 좀 더 토론을 하고 이 과정을 좀 겪어 줘야 할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난 21년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개정안이 투기세력에 대한 적절한 차단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관계없는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제 법안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여러 안건들만큼이나 우리 농촌의 어떤 현실을, 그 어려운 점을 좀 더 덜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여야가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소위에서는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준비 상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지금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고하고 발표하는 절차가 남아서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법안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가더라도 의원님들이 내주신 안은 올려 주시면 저희들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난번에 농지법을 심사한 건 아니지만 농지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셨고 제 기억에는 그걸 11월 말까지 정리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다음 법안소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준비가 된다면 저희들도 다음 법안소위나 12월 중순 법안소위나 둘 중의 하나는 상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10시17분)

○소위원장 이원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자료 1번 항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제정안 3건과 식품산업진흥법 1건, 모두 4건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푸드테크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도모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식물성 대체식품, 배달로봇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조례 일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관련 8조를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린바이오산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고, 오른편에 보시면 푸드테크산업과 기존 식품산업과의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푸드테크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이 식품소재나 이 부분에서 좀 중첩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바이오산업법과 현재 제정안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임호선 의원님 안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부개정 방식을 할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법률 제정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대체육 등이 축산업의 대체재로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김선교 의원안의 경우 제17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제명을 ‘육성 및 지원’, 한병도·김도읍 의원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서 ‘육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1대 농해수위 의결 대안도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으로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7페이지, 정의 규정입니다. 푸드테크의 개념을 제정안은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푸드테크를 좀 더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기술 변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3호는 푸드테크사업자를 신설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푸드테크사업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은 생략하고요.

19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바이오 분야하고 푸드테크 분야에서 식품소재 또는 대체식품 분야에서 중복가능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는 타당합니다.

23페이지는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인데요. 그 주체를 정부 또는 농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부처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은 정부로 수정했고요. 자료제출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재량 규정으로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체가 정부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7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입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인데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경영 정보로 하고 있는데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등으로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할 때도 대통령령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3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연장 또는 재연장으로 수정했습니다.

29페이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업지원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페이지에 기술개발 촉진인데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인데 이 법의 5조, 8조, 9조, 12조 등에서 '푸드테크산업 관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2조 연구시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7페이지, 국제협력 분야도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로 수정했고 그 주체를 1항과 2항은 정부로 통일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3조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푸드테크사업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인데요.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한병도 의원안은 업무정지명령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법례는 한병도 의원안처럼 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2개 안을 채용을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참여만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지원으로만 수정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의 신청인데요. 저희 수정의견은 그 신청 주체를 명확하게 푸드테크사업자, 2호에 대학, 연구기관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 사유도 수정을 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규제심사 방식이 있는데요. 제정안처럼 별도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제정안이 좀 낫다고 보았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5페이지에 보고 및 조사인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등'을 삭제했습니다.

57페이지에 권한의 위임·위탁과 별처 공무원 의제는 일반적인 입법례로 수정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인데요. 현행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 기준을 따라서 500만 원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도 하고 그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고, 한병도 의원안은 규제개선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16조와 같이 연계돼서 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전문위원의 주요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도 있고 그린바이오산업법도 있는데 이게 중복의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뭔가를 규제하거나 그것하고 충돌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충돌이 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주셔도 중복이나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 잠깐.....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정부 측 말씀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계속 조문별로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5페이지 제명의 경우에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성이라고 해도 육성의 범위에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목적 조항은 원안대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정의 조항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사업자 이렇게 정의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푸드테크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 푸드테크산업은 푸드테크를 적용한 산업을 말하고 푸드테크사업자는 푸드테크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원안 정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푸드테크를 정의하면서 거기에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의를 해 주고 푸드테크산업은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기보다 푸드테크가 정의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적용하는 산업이니까 이렇게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푸드테크사업자는 정의로 하기보다는 뒤에서 축약 정도로,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굳이, 푸드테크사업자는 푸드테크를 그냥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는 그대로 수용 의견이고요.

19페이지도 수용 의견입니다.

21페이지도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입니다. 이것도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다만 24페이지에 제4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보다는 그냥 부령으로 해 주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하고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 가지고 그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맞지 않으면 허

가를 안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류만 맞으면 신고를 그냥 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7조 1항의 경우에는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또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건’이라는 말보다는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항의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5항에서 지금 ‘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신고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3년을 주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자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10개월 지나고 변경신고를 하면 그다음부터 3년은 그대로 신고를 안 해도 되게 되니까 그렇게 넣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전문인력의 양성의 경우에는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1항으로 해 가지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 2항으로 ‘정부는 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항에 ‘정부는 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항으로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전문인력 양성이, 조금 더 내용이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창업지원은…… 여기의 내용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조항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13조에 보시면 금융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을 합쳐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9조 제목을 ‘창업 및 자금 지원’ 그렇게 하고 1항에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2항으로 ‘푸드테크 분야에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사업자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조항을 합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기술개발의 촉진의 경우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 여기에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로 꼭 한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이면 산업하고 연관되는 기술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푸드테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원천기술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의원님 안을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러니까 푸드테크 개념 정의에 보면 푸드테크가 기술이라는 말까지 포함돼 있는 거니까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호에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호에 ‘푸드테크 연구개발’, 3호는 그대로 4호도 그대로 하고 5호에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는 저희도 그대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경우에는 이것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중의 일부 또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보다는 그냥 ‘관련 기술’ 1항은 의원님 안대로 그대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2항은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정부는’ 이렇게 바꿔 주시고.

앞에서 만약에 푸드테크사업자 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삭제한다면 여기에서 축약을 해 주시면 의원님 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금융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창업지원하고 합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더 간결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전담기관의 지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의견을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49페이지, 규제개선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것을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김선교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 내 주신 안에서 1항을 ‘푸드테크사업자 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항은 전단은 괜찮은데 후단에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굳이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항부터 4항·5항·7항·8항까지는 사실은 이 내용이 없어도 정부행정관리기본법이나 절차법이나 이런 데 다 할 수가 있어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서 3항 이후는 법안에서 안 넣어 주셔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은 원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보고 및 조사 18조의 경우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 요건’ 그 말을 신고조항에서 뺏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간결하게 한다면 1항의 경우에는 김선교 의원님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간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항·3항은 그대로 원안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권한의 위임·위탁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별첨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도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22번, 그러니까 59페이지 과태료 부칙도 수석전문위원 의견 받고 거기에 다 동의를 하고요.

부칙의 경우에는 2항…… 그러니까 2조는 굳이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제가 한번 좀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님께서.

○**이만희 위원** 차관님, 푸드테크사업…… 푸드테크 관련 법안 올해 처음 다루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번 22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처음……

○**이만희 위원** 22대에 첫, 저거에서 처음 다루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농림부가……

사실은 어제 우리 이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요.

푸드테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종류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면 어떤 분야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아마 앞에 참고자료 나와 있을 겁니다만 세계적으로는 규모가 계속해서 커 가고 있고, 사실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의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약 61조 원 이 정도 되고 17년에서 20년 사이 연평균 한 31.4%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61조 원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식품이나 이런 거 수출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기계·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만희 위원** 기계·장비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식품을 만드는 기계·장비에, 외식 서비스할 때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음식 배달까지 하고 자동으로……

○**이만희 위원** 그 분야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만희 위원** 이 푸드테크 관련된 분야에 포함을 시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없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별도 법안으로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네.

다른 공청회도 했나,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공청회는……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신가요?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법안에 자꾸 이렇게 외래어가 사용되는 게 맞나 싶어요. 푸드테크라는 말 우리말로 옮기면 뭐 없나요, 좋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적절한 용어가 저희들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푸드테크라고 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32페이지, 창업보육 지원이라고 박스에 돼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권역별’하고 마지막 ‘구축’만 빼고 다……

○**임미애 위원** 어디?

○**문금주 위원** 32페이지, 창업보육 지원. 권역별 그것만 빼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이것 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것은 설명……

○**문금주 위원** 설명자료인데……

○**임미애 위원** 설명인데……

○**문금주 위원** 설명자료인데, 우리 농림부부터 이렇게 영어로만 쓰는……

나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뭐지요?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원-웰페어 뱬리 말씀하시는……

○**문금주 위원** 예, 그런 것도 그게 맞나 싶은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워낙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문금주 위원** 푸드테크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새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새로 나타나는 경제활동들 이런 것을 어떻게 용어로 정의할까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용어를 만들고 산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산업이 생기고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저희들이 법안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좀 변화를 시켜 줄 계몽을 해 줄 책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동의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자꾸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받아들일 것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숙되면서 저희들이 용어에 대한 그 것도 시장하고 같이 바꿔 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질문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저도 생소한 사람이여 가지고……

답변하실 때 모든 산업이 연계된다고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푸드 관련된……

○전종덕 위원 예, 푸드 관련해서.

그런데 11페이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만 의견을 들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하나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이제 우려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그 우려가 어떤 내용인지…… 어쨌든 수요를 경감시킨다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단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까지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약간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전종덕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 동의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안 써 놓으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축산단체가 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양육이나 대체육 그런 것들이 아마 푸드테크 중에 일부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육류의 소비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라고 그다음에 대체육이든 배양육이든 아직은 그렇게 빨리 다가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늘어나게 되면 국내 육류 시장을 조금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일 것 같은데 제가 축산단체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 육류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의 육류 소비도 늘어나고 대체육도 일부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축산단체한테.

그래서 우리 축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대책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술 개발을 또 같이 해 나가자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육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축산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확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규제 개선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조율이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정리된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굉장히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단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 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중에 유통이 될 때 대체육 내지는 배양육의 경우 정확한 표기나 이런 것들 유통 과정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이런 좀 문제가, 시장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단체는 어디든 간에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정리가 돼야지…… 유통 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다루지만 실제로 식물과 관련된 거는 또 그린바이오산업에서 이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좀 내용이 두 개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나 그런 것은 주로 R&D하고 관련해서 그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푸드테크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육성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33쪽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요즘 가면 주로 로봇이 서빙하고 이런 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포함됩니다.

○**임미애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 간에 이게 사업에서 충돌이 생길 여지는 없나요?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기술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것은 식당에서만 쓰는 로봇이야’라고 해서 그것 구분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기술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면 그 기술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부처 간에 어쩌면 충돌할 여지가, 지원이 이중적 내지는 이럴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R&D의 경우에, 국가 전체 R&D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원천기술하고 관련되는 것, 예컨대 스마트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센싱 기술이나 또는 그런 기술들, 원천기술들은 과기부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농업에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R&D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푸드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메라를 가지고 인식하는 기술이나, 서빙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때 장애물을 피해 가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은 과기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데 맞는 그런 응용기술들 그런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R&D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국가 전체 과학기술정책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법은 만들어 놔 놓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또 이 법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염려도 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건 저희들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면 조금 정리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크게, 15페이지를 보면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지요. 괜찮으시겠지요?

제명인데 아까 육성이냐 지원이냐인데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다음에 16페이지의 목적 조항,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의 정의 조항, 이 정의 조항에서…… 이게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푸드테크에 대한 개념을 여기 법마다 정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반영하자 아니면 여기에다가 푸드테크산업이랄까 또는 사업자랄까 이런 것까지도 명확히 하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사업자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부 측에서는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런 요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안대로 푸드테크를 정의를 하고 대통령령에서 유형을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호 그대로 가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푸드테크사업자는 정의 조항에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푸드테크 개념하고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가고 3호는 사업자라는 개념은 없어도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의원님들 발의하신 안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시지요, 정부 입장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4호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그렇게 들어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3호로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사업자 조항만 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팬찮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의원님 안대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9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다 육성과 지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팬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페이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의 작성 주체를 정부나 농식품부장관이냐 이게 쟁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신 대로 정부라고 해도 팬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정부로 정리하겠습니다.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24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통령령을 부령으로 해 주셔도……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정부로 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이냐 아니면 이 정도는 부령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부령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팬찮으시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게 된 이유가 1항의 주체가 정부입니다. 1항의 주체가 농림부장관이면 농림부령으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1항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작성의 주체가 정부니까 농식품부장관의 부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어떤 합목적적 성격에는 맞는 것 같네요. 법률형식 논리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팬찮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인데 여기 요건을, 요건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4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수정을 하면……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좀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7조는 정부에서 수정안 말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7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7조 1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요건을……

○**이만희 위원** 한번 불러 보십시오,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조의 1항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2항의 ‘신고업종’이라는 말을 ‘세부업종’ 그렇게 하면, 앞에 ‘신고한 사항 중 신고업종’ 그러니까 그 대신 ‘신고한 사항 중 세부업종’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6페이지의 5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유효기간 관련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아까 제가 변경신고도 있기 때문에 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5항과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입법례를 찾아보니까요 연구산업진흥법이나 그린바이오산업법 등에서는 변경신고를 별도로 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해도, 저는 의원안처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께서는 5항에 변경신고를 넣었는데요 일반적인 입법례는 변경신고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는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2년 10개월 돼 가지고 변경신고사항이 생겨서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또 두 달 있다가 갱신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변경신고할 때 그냥 바로 갱신까지 같이 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었던 건데요, 그게 다른 입법례가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변경신고하고 갱신이 각각, 변경신고한 다음에 또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만약에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2년 10개월째에 변경사항이 생겨 가지고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두 달 있다가 또 갱신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다른 입법례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현장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지금 변경신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신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일반적인 입법례는 신고든 변경신고든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정부하고 논의해서 변경신고를 넣을지 말지를 위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문금주 위원** 그거는 아니고 바로 전 조에 7조에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정의에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오히려 더 저는 타당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떤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의 조항에서요?

○**문금주 위원** 여기가 지금 푸드테크사업자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정의에 푸드테크사업자 정의를 넣어 주는 게 더……

17페이지 정의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12조에서 그냥 용어로 축약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푸드테크가 정의돼 있고 푸드테크사업자는 용어라기보다는 푸드테크를 하는 사업자, 일반명사니까 축약이 필요한 경우만 축약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 12조에서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축약으로 넘어갔거든요.

○**문금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이것은 입법례를 좀 더 지켜보고 뭐가 좀 더 합리적인 것인지 를 따져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 29페이지지요? 전문인력의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제가 아까 조문을 4항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정부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저도 아까 경청해 봤을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페이지의 창업지원, 여기는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하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한 조문으로 만들면 간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한 조문으로 만들자, 그렇고요.

33페이지의 기술개발의 촉진.

○**임미애 위원** 잠깐, 31페이지의 이것 그러면 문장을 죽 한번 내용을 읽어 주실래요,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9조 조제목이 '창업 및 자금지원' 이렇게 되고요. 1항이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사업자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름을 자금지원이라고 해요? 창업 및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금지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자금지원? 안 들어 본 것 같아서……

○**임미애 위원** 다시,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금융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항으로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사업자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만희 위원** 그게 2항이고 제목을 창업 및 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자금이 아니라 무슨 창업 및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더 안 낫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금지원이리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금융지원으로 하면, 지금 13조의 조제목을 섞은 거거든요. 13조가 금융지원이기 때문에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창업 및 금융지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금지원 이러니까 너무 한정된 것 같기도 하고 금융지원 이런 쪽으로 하든지……

○**소위원장 이원택** 금융지원 조항을 당겨 와서 하는 거니까 금융지원으로 하시지요.

33페이지 기술개발의 촉진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없었지요,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아까 의원님 안에다가 조금만 수정을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을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용어 정의에 기술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의원님 안하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2개를 합쳐서 1항은 의원님 안대로 가고 2항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정부는’ 이렇게 바꿔서 하고 앞에 사업자를 뺐으니까 그 푸드테크사업자 축약은 여기에서 그대로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자체가 2항에서 빠지는 이유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아마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이니까, 1항에서 정부라고 해 놨으니까 2항도 정부로 그냥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문금주 위원** 아까 앞에 의무조항이 어디에 있어.

○**소위원장 이원택** 지자체의 역할을 굳이……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어디에 있다니까. 아까 어디 있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 책임이지요, 책무. 책무인데, 아까 앞쪽에 있는데……

○**문금주 위원** 예, 책무에 있으니까, 3조의 책무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안 넣어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책무가 있을 텐데, 국제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지자체도 역할을 하게 할 거냐인데……

○**문금주 위원** 3조에 책무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는 지자체를 빼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빼도 없다?

○**문금주 위원** 예, 그렇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이고 수출이나 이런 쪽 지원이면 아마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했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3조의 아까 책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8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마 체계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진출이나 시장 개척하는 데는 제일 가까운 게 지자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조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문금주 위원** 예, 내가 봄서는 무방한데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충분한가요? 3조 책무로 국제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역할을 강제하는 데 이 내용이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임미애 위원** 충분한가요?

○**문금주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의 책무에 이런 것 산업 육성하면 당연히 해외시장 진출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무래도 다른 지원이나 이런 조항들도 전부 다 정부로 주체를 해 놨고요. 그게 총괄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책무 조항에다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여서, 아마 여기에 정부라고 해 놔도 저희들이 사업은 지자체

하고 같이 할 거고 일반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문금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금주 위원 저는 지자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국제회의 할 때 빠져나갈까 봐요. 경비 안 대 줄까 봐.

○문금주 위원 지자체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지자체는 생략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금융지원은 아까 저쪽으로 통합을 했고요.

41페이지 전담기관의 지정 등인데요. 정부 측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까 정부 측 수정의견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같고요.

아마 43페이지 3호에 18조1항 돼 있는데 금융지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아까 조문이 하나 빠지게 되면 인용조문이 17조1항으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다음에 47페이지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인데, 출연하거나 지원인데 15조 5항인가요? 15조 2항……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항, 2항이지요?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데 수석전문위원은 지원으로 했고 정부 측 수정동의는 비용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나 저희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앞의 ‘비용’이라는 말이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안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9페이지 규제개선의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아까 1항 제가 수정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1항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항의 후단 ‘이 경우’ 그 밑으로는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 이후부터는 다 삭제를 해도……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안처럼 되면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조문에서 빼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게 지금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규제개혁?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원적으로 심사하고, 의원님 안에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규제개혁 심사를 하더라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같이 통과해서 하는 게 저희로서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잘 운영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것 가지고 같이……

○**소위원장 이원택** 바로바로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지, 규제는 또 속도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53페이지인가요?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5페이지의 보고 및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부분은 아까 신고요건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수정의견 말씀……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차관님의 수정의견처럼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들 조사, 서류 제출하게 되면 의원안보다 좀 광범위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사업자한테 모든 걸 광범위하게 다 보고하게 하고 조사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항만 보고하고 조사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전문위원은 ‘원활한’이라는 표현이 잘못하면 다양한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안에서는 ‘신고 요건 위반 여부 확인, 전담기관 감독’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조사의 대상이 전담……

○**문금주 위원** 제가 봐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차관님 의견하고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목적은 같은데 해석할 때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

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금주 위원** 그러면 앞에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가고 뒤에 정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차관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넣으면 두 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앞에 그러면 신고 요건이라는 말만 빼면 되니까요, 그 부분 문구를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권한의 위임과 위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8페이지,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 과태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하실지 500만 원으로 하실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500으로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500만 원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서 과태료 기준을 500으로 잡고 있으면.

○**소위원장 이원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61페이지 부칙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61페이지, 부칙.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규제개선 심의기관은 총리실로 하기 때문에 부칙 2조는 삭제……

○**소위원장 이원택** 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 부분은 삭제하자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대체적으로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알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인용 조문 정리나 좀 달라지면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봐 가지고 명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완료한 걸로 하고 조문 정리되면 마지막에 일괄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

○**이만희 위원** 의결하지 않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조문들 좀 정리해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나중에 한다고요?

○문금주 위원 가결만 나중에 한다고요.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11시18분)

○소위원장 이원택 두 번째,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번입니다. 3건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옥주의원안은 남성 농업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비용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표를 보시면 현재 여성 농업인의 건강검진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남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필요 의견입니다.

남성에 대한 건강검진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연간 연평균 490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학교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및 운행경비 지원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교통수단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원거리 학생 등까지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학생을 통학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통접근성 제고 측면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9페이지 하단입니다—동 사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사무이고—10페이지입니다—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통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세 번째로 현행 법 2004년 제정 이래 동 조항을 통해 지원한 사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안인데요.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처럼 청년의 연령 범위를 법률에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그밖의 청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일자리, 정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분해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청년별 연령과 아동 연령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페이지, 남성 농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비용 지원 조항은 그건 그냥 현행 조항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내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분야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관계부처도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농어촌학교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행경비 지원 의무 신설은 이것은 아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여기에다 넣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예산으로도 일부 교통수단 농촌지역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교육부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재부 등 다른 부처도 반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 추가하는 것은 서천호 의원님 안을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나이 조항을 따로 해 주셨는데요. 이게 법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사업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나이를 여기서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개별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마다 나이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이 법에서 나이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을 그냥 그대로 해도 저희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지금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뭐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대 항목의 10개 세부……

○**임미애 위원** 한번 불러 보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직무대리 정아름** 구체적인 건 갖고 있지 않은데 참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순환계, 호흡계, 근골격계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항목이 있고 10개 세부 항목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직무대리 정아름**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날 때까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 이만희 위원 지금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일반건강검진.

○ 이만희 위원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건강검진들을……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홀수년도, 짹수년도 하기는 하던데……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경우만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 이만희 위원 그것 기본에다가 여성 농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특별한 항목을……

○ 이만희 위원 더 특정한 항목을 플러스한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따로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농작업 특성상 여성 농업인들의 밭농사의 노동 일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비추어봤을 때 근골격계나 호흡기 질환이 실제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해서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요구들이 있었던 건데 국가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체계는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여성들의 경우 근골격계, 순환계, 하우스하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었던 건데, 여성 농업인들의 밭작업, 농작업 시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됐던 거라서 저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 전종덕 위원 수검률이 낮아요.

○ 임미애 위원 수검률이 매우 낮나요?

○ 전종덕 위원 매우 낮아요. 못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 이만희 위원 첫째는 건강보험에 따라서 하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일반건강검진.

○ 이만희 위원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성 농업인같이 특수한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강검진 항목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같은 것 그런 쪽은 포함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추가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걸 제가 지금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복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농약중독감시 이렇게 돼 있고 항목이 농약노출·증상 평가도구, 급성농약중독 평가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이 근골격계 질환 그렇게 해 가지고 슬관절, 요추, 수골, 근골격계 증상, 신체부담 평가, 추가 설문하도록 돼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 진찰과 판정 하게 돼 있습니다.

골절위험도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골밀도검사를 추가로 요추, 대퇴골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손상조사 설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이런 것들 검사하게 돼 있고 혈모글로빈도 따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진하고 관련된 폐질환을 폐활량 검사, 기류용적폐곡선 등 검사를 추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항목은 아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려 가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생각 안 나는데 작년에 예산 대비 수검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검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20%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늘었는데……

○임미애 위원 전면 시행으로 되어서, 그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고 전면 시행이 올해부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올해부터.

○전종덕 위원 올해부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늘었구나.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전체 여성 노동자가 다 할 수는 없는 예산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신청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법안은 남성에게도 주자 하는 건데……

○임미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제도가 남성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좋은데 남성의 특성과는 조금 다른 제도여서 취지는 공감하나 여성 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소위원장 이원택 거기에 집중하자?

○임미애 위원 예.

○전종덕 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만……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위원님 질의 아까 손을 계속 들었거든요.

○전종덕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려고……

먼저 하십시오.

○문금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발언 허락을 좀 받고 얘기를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앞에서……

○전종덕 위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금주 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농협들이 건강검진을 시켜 주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거는 농협에서 자체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지역마다 다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협이 예를 들어서 이용고배당 중에 하나로 아니면 교육지원 사업비의 하나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다릅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다면 조합별로 다르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좀 권장을 하든 아니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그걸 확대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아침에 버스를 대절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신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빠지는 사람도 없고 체크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성농업인……

○**문금주 위원** 굳이 의무를 안 시키더라도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하시고 정희용 간사님.

○**전종덕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문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건보에서 하는 일반건강검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아주 기본검사만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비용의 일부를 조합이 좀 지원해 주는……

○**전종덕 위원** 그럴 수 있는데……

○**문금주 위원** 여기에 좀 플러스를 시키면 되지, 검사 항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추가로 하는 항목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조항은 아주 기본검사이기 때문에 거기마다 좀 더 특수한 건강검진을 붙여서 농협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도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설문조사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 검사든 폐질환 검사든 이런 검사들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검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해 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기에서 좀 더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CT든 MRI든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질환이 나올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다 자부담으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가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예방이나 조기 발견이 목적이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질환이 발견돼서 치료나 정밀진단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개인의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검사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검사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주 기초 플러스 일부 알파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진단이 어려운 검사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전종덕 위원** 여기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법안 문구 심사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 위원** 차관님 말씀처럼 건강검진은 조기발견 그래서 이제 중할 때 발견이 되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치료비도 줄여 드릴 수 있고 완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남성농업인들도 송옥주 의원님 발의 취지가 생각해 보면 그냥 타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시범적으로라도 남성 중에 고령 아니면 또 남성 중에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지금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희용 위원** 그런 거 고민을 좀 우리가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송옥주 의원님께도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희용 간사가 말씀하신 거, 송옥주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 보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농민 중에 재정력이 취약한 소농이라든가 또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약간 시범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다 맞는 말인데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 없으면 조문 정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남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비용 지원은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교통수단 제공 및 운행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거 이 부분도 타 법과, 타 부처와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 취지의 법안을 놓고 볼 때 남성 농업인 중에 아까 고령 농업인 이든 청년 농업인이든 아니면 재정 취약계층이든 그건 정부 측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게 검토된 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막 농협에서 독려해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그냥 패스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래서 가급적 그래도 받으시면 뭐가 걸리지더라도 걸리지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방법을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마을 단위로 하게 되면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통학 교통 지원 있잖아요. 이거 이제 대체로 농어촌 지역은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당국에 이 법은 지금 보류되지만 우리 부 차원에서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 가지고 전체가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저희들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13페이지의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을 추가하는 것 이건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서천호 의원님 안으로, 원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서천호 의원님 안으로.

그러면 아까 송옥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남성 농

업인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미 있는 안이 나오면 재심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천호 의원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또 넘어가지요. 빨리빨리 심사를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11시38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8항 정부에서 제출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심사자료 3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의 법률과 산림청 소관 5개의 법률에 대하여 지방자율성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요약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괄적으로 일괄 정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지방자율성 제고 관련 일괄 정비의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에의 승인 및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승인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보고는 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알리는 통보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승인 및 보고사항을 통보사항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일괄 정비의 취지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통일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는 조례 제정 기준을 삭제해서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환경정비계획 등의 승인 그리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허가 취소 그다음에 보고 및 출입·검사와 관련해서 이 규정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자구 수정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의 네모 부분, 검토 의견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 등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설 등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계획서 등 제출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14조제6항을 보시면 그 법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영도시농장의 개설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개설 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제3항의 규정을 보시면 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검사 등 결과 보고 및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사항을 통보사항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사항을 통보사항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문금주 위원** 보고 중에 죄송한데 별다른 문제 없으면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다 비슷한 내용.....

○**전문위원 임재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문위원 임재금** 쟁점 있는 부분만.....

○**소위원장 이원택** 쟁점만 딱딱.

○**전문위원 임재금** 알겠습니다.

21쪽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림청 소관 사항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 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을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현재 대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국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게 되면 국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법도 좀 쟁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대령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지정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 관여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며 현재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관할 지역의 주민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수목원 예정 지역 지정에 관한 건데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부분과 똑같은 사항인데 공립 수목원의 입장료 등에 대해서 이 경우도 삭제를 하게 되면 국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페이지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은 다 동의를 하고, 두 번째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부분은 수용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 것 5개 중에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광호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대신 설명……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예.

28페이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중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수목원정원법에 이미 공공시설이라든지 지방정원 등에 대한 사용료·입장료 등을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 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관광 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장애인 무료 입장 등 정책적 대우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개정안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자체 각각의 특수한 사정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하는 개정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처럼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장애인 무료 입장 등 정책적 대우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개정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산림청에서 나와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 맡겨 놔도, 오히려 지자체가 요즘에 이런 부분들 정책적 고려를 더 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까지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한테 위임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자율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문구를 바꾸거나 또는 권한을 내려 주는 부분, 조례로 권한을 내려 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는 눈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하는데 다만 32페이지 산림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 여부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산림청 국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많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표준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문금주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장들도 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

신 것은 지자체에 대한 자치 수준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조금 의견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일단은 농어촌정비법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것 문제 없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조에 ‘승인’을 ‘제출’로 바꾸는 것 문제 없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서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것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또 말산업 육성법에서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것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또 축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인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징수 규정을 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입장료 등 사항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 좀 걱정을 하지만 그것은 아까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지자체가 잘 예우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넘기는 것 다른 의견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법에서 아까 안전 문제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표준안을 내리겠다는 거지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례로 넘기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문제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이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기초적인 사항들은 지금처럼 대통령령에서 하는 쪽으로 정해서 이 정도는 따라서 한번……

여기 보면, 내용도 보시면 지정위원회 구성 기준 같은 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거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록으로 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산림청에서 좀 잘 받아서 표준지침 만들

때 정확하게 각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것 또 마지막 수목원과 관련된 것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은 일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위원장님, 13페이지의 개설기준 부분 그 부분……

○**소위원장 이원택** 어떤 거지요?

○**문금주 위원** 정부가 따른다고 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용한다고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관련한 심사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위원장님, 제일 마지막 수목원·정원 말씀 안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 했잖아요, 수목원·정원, 했는데?

○**문금주 위원** 몇 페이지……

○**전문위원 임재금** 40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 거론했는데?

○**전문위원 임재금** 원안대로 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법안심사하고 식사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07)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11시55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하단에 표를 보시면, 24년·25년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액 삭감이 된 점을 고려해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입니다.

3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전입학’으로 되어 있는데 ‘전학 또는 입학’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항에서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 유치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 호로 분리해서 유치원이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제4항에서 ‘농어촌유학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좀 불분명하므로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1호가 그렇게 분리했고요. 2호에서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는 단체’, 윤준병 의원님 안 4항에 있는 내용을 각 호로 분리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학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잠도 자고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표에서 보듯이 사무장활동비 등의 인건비가 24년·25년 전액 삭감돼서 관련 협의회 등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 수용 시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로 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호는 현행대로 하고 2호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대통령령에 예시를 했고요. 휴양마을사업자는 현행법 제2조 6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되더라도 실제 예산이 반영될지는 별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13·14·15쪽은 참고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 논거로는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인증 유지 기관이 4개소에 불과합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취지로 관광진흥법에서도 유사 인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개정안은 25년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27년 9월까지 인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입법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종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밖의 참고자료는 뒤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페이지,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윤준병 의원님께서 용어 정의에다가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넣어 주셨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4페이지에 있는 14조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농어촌체험교육 이게 농어촌유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체험교육은 용어의 정의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학만 여기다가 정의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2조의 농어촌유학의 정의는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의원님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14조의 1항에 지금 현재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어촌체험교육’하고 괄호 치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농어촌유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유학이, 농어촌체험교육이 포함하게 된다는 게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더 간단하게 하면서 용어 정의를 안 넣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항에서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이것은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4항은 이게 유학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아마 농어촌유학을 따로 나누셨으니까 의원님께서 두셨을 것 같은데 아까 체험교육에 포함해서 해 버리면 3항에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4항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서천호 의원님 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건데요.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2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동 프로그램 마련을 보통 단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의 내용을 여기다 넣어 주시는 게 조문의 내용으로도 그렇고 의원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다 동의를 하고요.

부칙을 아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인증기관들이 4개가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다 인증기관이 만료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한다' 이렇게 했고 하나 있는 기관이, 27년 9월 2일까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도록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1개 남은 기관이 26년 1월 1일 이전에 '자기들도 그냥 안 쓰겠다'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그냥 26년 1월 1일로, 정부 제출안대로 해 주셔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유학을 체험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요. 농어촌체험에 농어촌유학이 포함된다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14조 현행 조문 보시면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치원의 원아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 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농어촌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학도 여기 포함돼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그 유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체험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농어촌유학의 개념을 저희들이 살려서 추가한 것입니다.

○**이만희 위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간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학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학습을 받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요. 크게 다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 자체가 교육부 쪽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교육부·지방교육청 해 가지고, 지자체까지 같이해 가

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가 그전에 일부 지원을 하다가 이것 지방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으로 다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유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저희들이 유학센터처럼 연결해 주고 그러는 사업……

○이만희 위원 그것은 오면 지역의 학교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들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은데요. 체험교육에 포함시키는 농어촌유학보다는 체험하고 유학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윤준병 의원님이 용어 정의에 11호로 농어촌유학을 따로 정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농어촌체험교육도 앞에다가 따로 정의를 해야 되고 법 조항들이 그런 것들 다 따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의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실은 농어촌유학을 지금 여기에 정의를 하시고 넣으려고 하시는 취지는 유학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원 내용에 맞게 조문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차관님 말씀처럼 정의 규정을 안 넣어도…… 여기에 읽어 보면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이렇게 해도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안 넣어도 저는 차관님 말씀처럼 여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이 쭉 돼 있으니까. 그래서 농어촌체험교육도 아마 정의 규정에다 안 넣었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정의 조항에는 안 넣고 이 밑의 14조에 이것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금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체험교육 안에 이 유학교육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또 안 맞거든. 그래서 ‘및 농어촌유학을’ 이렇게 해도, 정의 규정 안 넣어도 앞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빼고 14조 1항에서 앞에 있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 이외 지역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써 주고 3항에서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신가요?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농어촌체험하고 유학은 다르지요. 체험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유학은 일정 부분 기간에 전입을 하는 거잖아요, 농어촌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 농촌유학이 또 농촌유학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

어쨌든 농림부에서, 우리 부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로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 가지고 이게 정부가 어쨌든 책임을 안 지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게 지자체가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하고 유학센터 일부 자부담하면 거의 사업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올해 그 후과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둬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는데 정부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예산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조문 정리 좀 할까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지금 23년도까지만 있었고 24년도에는 없어진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25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안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법조문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농어촌으로 유학생이 가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농어촌유학의 효과는 그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돈을 내는 게 맞다 그렇게 재정 당국은 보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는데 개소 수가, 지원 시설이 24개소예요. 그런데 유학생 수가 1년에 260명이에요. 그러니까 1개소당 11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농촌유학을 했다는 소리가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5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는 있으나 법을 바꾸어서 만약에 지원을 강제 규정으로 둔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23년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23년에 24개, 유학생 260명 정부가 지원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임미애 위원 예,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4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래도 유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 이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농어촌유학을 별도로 근거가 없더라도 농어촌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었던 거고요. 이것은 윤준병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농어촌유학을 여기다 근거는 만들어 두고 결국은 ‘지원할 수 있다’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법은 개정해 놓고 그러면 이후에 농림부는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이나 그런 식으로 지자체가 돈을 내면 우리가 매칭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행안부나 거기서 특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 포괄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법 개정 취지가 앞으로 지원 근거가 끊겨서 지원을 안 해 줘서 근거를 마련해서 정부 지원을 우리가 얻기 위한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 당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재정 당국의 그런 평계는, 설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고.

지금은 농촌에만 해당이 되는 것도, 효과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도시, 도회지에서 살던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감성적인 그런, 정서적 발달이랄지 여러 가지 효과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권장해야 될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근거도 마련했으니 이번에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유학센터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게 교육청의 교육과정에, 이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유학센터는 학교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임미애 위원 연결해 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를 할 수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학교로 전입학을 해야 이렇게……

○임미애 위원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유학센터를 통해서 유학 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런 식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이런 것을 아마 평가하고서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할 수 있다, 지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법안 개정을 한다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문금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법안 개정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할 거면 ‘뭐 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유학센터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유학생이 그리 갔을 때 거기에서 체류한다든가 아니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올해도 보면 서울교육청하고 전·남북, 강원하고 MOU를 맺어서 지자체가 이주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유학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연결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전종덕 위원** 짧게 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전종덕 위원** 먼저 하세요.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저는 농어촌체험이나 또 유학센터 이런 쪽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의 성격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마을이든 농어촌체험마을이든 그러면 체험마을과 휴양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비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휴양마을로 지정되거나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 거기에 계시는 사무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사업 성격상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현재는 유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 관련된 사항 같으면 오히려 지방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쪽에서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그런 여건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이나……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 성격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을 자기들 알아서 하고 그것 운영을 하기 위한 마을의 사무장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식의 예산 지원 형태는 안 맞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을 보내고 받는 그 지역 간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거기서 체류하면서 드는 비용 그것을 농식품부가 줘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이만희 위원** 나는 여기 사무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장.

○**전종덕 위원** 저 할게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촌유학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이만희 위원** 포함해서.

○**전종덕 위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 안 하셨던 것이 이것 지자체나 교육부에서 하면 되고, 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 물어볼 때는 평가는 안 하셨어요, 차관님이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9페이지에 보면 일인당 경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지자체들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자체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촌유학은 또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세우면 되는 문제인데요. 주로 농림부에서는 국비가 유학센터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학센터로 지원된 비용인데 유학센터가 농촌유학으로 유도하고 농어촌학교로 옮겨 가는 이 과정에서의 센터 역할을 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개나 되어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예산을 받지 않는 기관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센터 예산을 그동안은, 2007년부터 했던가요? 2007년부터 23년까지 운영을 하셨어요.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을 하셔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산이 지원됐었지요. 그런데 24년에 국비, 시·도교육청비, 지자체비 이렇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국비가 끊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상 없이 사업이 축소되어 버린 거지요. 그리고 유학센터에서도 예산을 받다가 갑자기 예산이 줄어 버리니까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접수된 것에 따르면 유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기관에서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이 한 30~40% 축소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농림부에서도 농어촌 활성화는 농촌소멸을 막는 유력한 제도 중의 하나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역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했던, 오셔서 취지를 말씀하시겠지만 농촌유학과 관련해서도 농림부가 이렇게 예산을 올해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요. 체험시설로 보고 체험프로그램으로 보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제 우리 지원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농어촌유학의 개념을 집어넣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짧게……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지적도 대단히 타당한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센터가 안정적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그냥 뚝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모집하고 홍보하는 성과가 있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만희 위원님 말씀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임미애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상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도 맞고 거기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쳐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가 지금 밥도 먹어야 되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농어촌유학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이렇게 제안한 취지의 내용에는 이 법 자체에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취지의 내용은 지금도 교육부라든지 이쪽에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농어촌유학이라는 개념을 법에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 내용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교육부나 또는 그 내용을 진작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예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유학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넣고 이렇게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체험교육이라는 내용에 그냥 설명해서 뭐 이렇게 하는, 학교에 지원한다 하는 내용보다는 농어촌유학이라는 개념을 법적인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래서 농어촌유학이라고 교육부나 다른 쪽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제 우리 법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의 한 유형으로 농어촌유학이라는 개념을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농어촌유학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정의도 넣고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는 농어촌유학을 따로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14조 1항에 현행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하고 ‘및 농어촌 이외의 지역 학생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입학하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말씀하신 취지를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준병 위원** 정의에다 안 넣어도 농어촌유학이라는 내용이 법에서 명문화가 되어야 다른 지자체나 다른 법에서 이 유사한 내용과 관련된 지원이 가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4항은 굳이 따로 안 나누셔도 3항에서 다 포함되니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조문 정리하겠습니다.

토론 오래 걸리네요.

일단 3페이지의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도 있지만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항에 농어촌유학 및 농어촌유학을 명문화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법안 발의한 것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차관께서 5페이지의 4항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4항·5항 전부 다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이 법의 핵심인 학교에, 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윤준병 위원** 그것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포괄적으로 여기서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거기에서 학생한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윤준병 위원**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정의에다 농어촌유학이라는 정의를 굳이 안 넣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행 14조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는 농어촌유학이 체험교육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나눠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넣었는데 정의 조항에 농어촌 체험 교육도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유학을 넣게 되면 체험 교육도 따로 넣어야 되고 그러면 14조를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에 넣을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명문으로 하면……

○**윤준병 위원** 체험 교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의가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항에만 들어가니까, 이 조항에 한정되는 거니까 굳이 정의를 안 해도 이 조항에서 정의로 풀어 주면 되는 거니까 체험 교육도 그렇게 풀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유학도 이 조항에서 이렇게 풀어서 쓰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4조 1항에서 사실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서 쓰겠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인데요.

저기 한 가지……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5페이지의 4항에 보면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학교·단체·학생 세 가지를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학교만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하고 학생은 빠지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으니까요.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학생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것은 아마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 그거는 그냥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이제 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긴 한데 학교 따로, 지자체에서 학생을 상대로 보내거든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학생을 거쳐서 학생한테 가는 프로그램 말고 지자체에서 매칭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내는 지자체, 받는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지금 5 대 5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학교에다만 지원하는 것처럼 제한하면 그건 학생한테 지금 매칭하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서 굳이 그 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부처 쪽 반대 이런 게 좀 심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 등에’ 그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른 데까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숨겨서 들어가 주시면.

○**윤준병 위원** 예, 뭐 그렇게, ‘학교 등에’.

○**소위원장 이원택** ‘학교 등’ 팬찮겠어요, 윤준병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해 주시면……

○**윤준병 위원** 학생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이 주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학교에 주면 학교가 학생한테는 줄 수 있으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요, 학생이 아니고 학생을 지원하는 단체가 중요한 건데 이 단체가 빠지면 안 되지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유학센터 지원해야 되니까.

○**윤준병 위원** 학생을 지원하는 단체도 중요하고요. 학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자체에서 농어촌유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자체에서 보내는 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보내는 자체에서도 지원하고 받는 자체에서 지원해서 5 대 5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하게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관계부처 반대가 꽤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학교 등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윤준병 위원** 학생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주인데. 지금 농어촌유학을 하고 있는 게 학생이, 유학생이 학생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학생을 지원해서 실제 가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활동하는데 보조하는 내용은 학교나 이게 지원을 하는 보조적인 내용은 될 수 있지만……

○**이만희 위원** 이거 오찬을 하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 오찬을 하고 가시자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가게요.

차관님, 이 부분은 여기 지금 4항, 5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등’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학교와 학생 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자체 입장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가서 또 법사위에 가서 기재부하고 또 막힐까 봐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법사위에 가서 막히는 경우, 만약에 그게 제약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학교와 학생 등’ 그렇게 일단.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가시지요.

입법하신 우리 윤준병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11페이지지요? 서천호 의원님안 이건 뭐 조금 심사를……

○임미애 위원 이건 점심 먹고 와서 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이 안과 관련해서 이건 지금 농식품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꿔서 넣어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금주 위원 밥 먹고 와서 하자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다 끝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6조 2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공동 프로그램 마련이 단체들이 하는 거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넣어 주시면 단체라고 지정을 하면 이것 가지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문금주 위원 정부 의견이 타당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공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고. 17페이지에 정부 제출안 뭐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안대로.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22, 부칙에도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인증은 마지막 그 단체가 전혀 의견 없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거는 부칙 관련해서 윤준병·서천호 의원님안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정부안은 26년 1월 1일부터인데 다 26년 1월 1일로.

○소위원장 이원택 26년? 1년이 지나야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조항만 26년 1월 1일이고요. 이게 지금 법이 3개가 합쳐져서 그런 건데요, 부칙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아까 그 인증 기관만 26년 1월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만 26년 1월 1일이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나머지는 6개월 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6개월 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심사를 마쳤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1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자료 5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이후에 송옥주·황명선 의원님 안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내용은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소위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첫 번째로 보험료 할증 관련해서 할증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둘째로 재해대책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임산물 품목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네 번째로 가입률 제고 관련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할증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황명선 의원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송옥주 의원님은 병해충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연례적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현재 농식품부가 농금원 등을 통해서, 자료요청 또는 조치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현재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점 등 그리고 정부가 5년마다 관련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쪽인데요.

송옥주 의원님께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 수용 시에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긍정적 이지만 검증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처럼 손해평가요령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38페이지에 기 논의된 사항인데요.

황명선 의원님은 정부의 부담률을 70%, 송옥주 의원님은 8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농금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농금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논의된 사항도 포함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업재해 정의 변경은 현행대로 그냥 두시는 게 농업인 지원 범위도 더 늘어나고 법 체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으로 한정하게 돼 버리면 질병이나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포함이 되는데 빠져 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구 의원님이나 송옥주 의원님은 일조량 부족하고 이런 것 병충해를 추가로 넣었는데 이거는 안 넣어도 이미 포함돼 있고 법 체계상으로도 그게 다 정해질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두시는 게 농업인한테도 더 유리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은 일부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페이지에 지금 3호가 들어가 있고 이원택 의원님 안에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 3의2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행 3호에 상품 개발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안 넣어 주셔도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수현 의원님 안에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품목 수와 관련된 형평성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든 임산물이든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계속 넣는 게 필요하니까 형평성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박수현 의원님 안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거는 정부 내부에, 산림청이 농식품부의 외청이니까 굳이 여기다 표현을 안 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항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항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립·변경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의 연례적 실태조사의 경우에, 여기 지금 실태조사 내용의 재평가, 이의신청 현황, 수집 관리하는 지역별·재해별 통계자료 이런 거는 실태조사라고 하기는 조금 상황

이 그렇고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안 넣어 주셔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 의미로 하기보다는…… 따로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7페이지의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료율 넣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손해 평가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 산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만들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서 수리된 경우에만 확정이 되도록 보험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산정까지는 안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서 보험료율의 산정 관련해 가지고 이원택 의원님 안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율 산정은 심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업자가 정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통과되어야지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기준 변경의 경우에는 그때 제가 대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 할 때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시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의 경우에는—21페이지입니다—이것은 재해보험심의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송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기후위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의미 같아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3조 1항에서, 거기다가 추가로 더 받아 주시면 그게 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심의회에서 기후위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로 심의 대상으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목적물 재검토 연례화,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심의회 의결을 통한 보상범위 결정 및 미가입 농어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의회를 그냥 거치도록 하게 되면 되니까 심의회 심의 내용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이것은 보험법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26페이지,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의 경우

에는, 감면의 경우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감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재해를 자기가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에 감면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에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이 조항으로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28조의 경우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28페이지의 보험가입자 확대 노력, 보험상품 안내 의무화는 보험가입자 확대 노력은 보험사업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보험상품 안내 의무화는 이미 보험업법하고 거기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고 충분히 그 설명을 하도록 법에 이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항에서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의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의 경우에도 이것도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금융위에 신고하고 수리가 이루어져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 상승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하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굳이 안 넣어 주셔도 의미가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의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는 여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량만 의미가 조금 모호해서 그것만 빼고 그냥 해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증조사 실시, 3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손해평가요령을 저희들이 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요령에 따라서 검증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35페이지의 손해평가인력 품목 전문성 제고는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는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보험료 의무지원비율 명문화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충돌되는 면이 있고, 지자체 보조를 정부 보조로 대체하는 경우는 농가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정책보험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41페이지, 정부의 보험료 지원항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것은 누적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전담기관의 지정은 이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45페이지,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는 정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 부칙의 경우에 기본계획 내용이 앞에서 5년에서 3년 단축 조항이 있는데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조는 제외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일단 보험 가입 대상 정의에서 ‘재해란’ 이렇게 정의 내리는 영역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업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위상을 놓고 보면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재해보험법은 좀 선택적인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가 2조의 정의에서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재해대책법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더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의 내용의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질병이나 화재는 선택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재해대책법상의 재해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입법 구조가 오히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상의 입법 체계상, 기본과 선택 이 내용상 그게 정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3쪽, 보험목적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담자고 했는데 입법하고자 했던 취지는 현재 되어 있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연례적인 점검이나 이게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적정성 여부나 이것을 검토해 보고 검토 결과 그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이 취지의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 그냥 ‘지속적으로’ 이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연례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취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늘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 30쪽인가요? 예전에 할증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농민들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최소한도 배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은 어떻든 그 내용은 담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할증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죽 했고요.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재해보험사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 이것은 할증 내용에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겠다는 뜻입니까? 농식품부 의견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윤준병 위원** 9조 1항에서 보험료율 산정, 2항이 할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담으려고 넣은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30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3항을 신설해 주셨는데요. 3항에 ‘부당한 보험료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험업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굳이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부당하게 하는 내용보다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을 않는다 이 문구를 명확하게 넣고, 대신에 농업인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과실로 발생한 피해 이것은 할증 영역에 포함된다 이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그것은 법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할인·할증 제도를 만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준병 위원** 아니, 법에 그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증·할인 설계를 할 때 그 내용이 위반되지 않지 법에 근거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보험사업자가 할증과 할인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현장에서 늘 걱정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입법에 넣어 가지고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겠다 이게 발의한 입법 취지거든요. 그 내용이 이번에 입법할 때 명확하게 담겼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이미 보험업법에 부당하게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게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부당하게 하는 내용은 부당한 거고 우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그 부당하다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자연재해는 부당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자연재해를 입어 가지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의 원칙으로 따지면 당연히 할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은 합니다만……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정책 설계를 잘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사실은 정책보험이니까, 물론 보험이라는 게 사회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정부가 대신에 보험료 전체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베퍼링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용은. 그러나 본인은 귀책사유가 없는데 정책보험이라는 미명하에 과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할증해 버리겠다, 그 전체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보험의 기본 취지, 특히 농어업재해보호법상 가지고 있는 취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의 유지나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의 원칙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그것은 정부가 일정한 베퍼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 5000

억 내놓고 보험설계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매년, 한 10년 정도의…… 저희가 시군이나 읍면 단위로 피해율이나, 그래서 보험료 받은 것, 보험금 지급한 것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윤준병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보험을 하면서 귀책사유 있는 것처럼 할증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수용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가 단위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겠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내에 어떤 농장은 피해를 세 번이나 보고 보험금을 세 번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험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그 농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가입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보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대 속에서 적절하게 같이 맞추자는 취지니까요. 저희들이 할인이나 할증은 충분히 위원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윤준병 위원** 이런 것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동일한 재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정한 내용을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필요하면 정부가 그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요청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것을 할증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연히 재해 입었다고 해서 정책보험이라는 내용 때문에……

실링이 예를 들어 5000억이에요, 연예. 5000억이 오버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서로 줄여 가지고, 원래는 농가당 100만 원씩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내용이 규모가 커져서 그 내용 다 분담해야 되니까 보험 전체 5000억이라는 그것 때문에 100만 원씩 받아야 될 내용을 70만 원만 받도록 하고 30만 원은 할증 비슷하게 까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없애야 되겠다, 이번 차제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할인·할증하고 관련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법에 굳이 명시를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 보면 최근 한 5년간 누적 기준으로 보면 3612억 원을 할인을 해줬고요. 할증은 922억 원 정도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은 물론 보험이니까 할증과 할인이 있겠지요. 대신에 할인과 관련된 내용, 페이버(favor)도,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을 정책적인 큰 틀의 총량이라는 보험 수입 금액이 있다는 것에 맞추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증을 한다,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할증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돼 왔어요, 그동안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윤준병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보험료율의 할증·할인 부분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농해수 위에서 문제가 돼 왔었잖아,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농가 단위로 가는 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자동차보험이라도 한 동네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10명이면 10명이 다 개별적, 같은 동네 산다고 한 사람이 사고 내 가지고, 사고 나서 옆에 있는 나머지 아홉 사람을 전부 다 할증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농업재해보험은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농가 단위로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지켜보면 이게 개선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정책 방향이 그 방향은 맞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할인·할증 부분을 제가 한번 죽 점검을 했고요.

지금 할인·할증하는 구간이 현재는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한 9개 구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나눠져……

그래서 할증을 받는 농가도 자기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 할증되든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많이 할증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조금 할증되도록 한다든가 할인을 받는 사람도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구간을 세부적으로 좀 더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구간인데 내년에 한 13개 구간,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나누고 말씀하신 대로 농가 단위로 갈 수 있게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장수준이 낮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70% 정도만 보장해 달라고 가입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할증을 아예 유예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고손해, 그러니까 피해를…… 자기가 노력을 안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장들 그런 농장들은 아예 높은 보장수준으로 가입을 못 하게 막거나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농장들은 어떤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 할증을 조금 더 세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할증 기준으로 지금 만들려고……

○**이만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가 단위로 간다는 정책 방향성은 섰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20쪽,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간사님 안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수정동의를 하시면

서 구성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심의회에, 이게 그렇게 되면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강화하는 요건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30쪽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군 단위로 이렇게 동일한 재해보험도를 갖는 집단으로 정해서 보험료율을 누적손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저는 위헌의 위험성도 있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형태로는……

예를 들어 지금 3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항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손질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의지를 이번 개정안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0페이지의 재해보험심의회 구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해 주신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듣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30페이지의 보험료율의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질의……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끝까지 설명을 듣다 의문이 나는 지점이요 할증 관련해서 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농가나 지역에 대해서 할증을 더 강화하겠다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이든 어쨌든 그게 많이 발생하는 곳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개인한테 부담해서 할증을 높이는 게 맞나요, 방향성이?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물어보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보험금 탄 농장들 이렇게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은 재해가 왔는데도 이 농장은 그래도 재해를 안 입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전종덕 위원** 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은 아예 대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폭설이 내려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 하우스가 주저앉는다, 그러면 어떤 농장은 그래도 거기에 가서 눈이라도 털어내고 안에 온풍이라도 돌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안 입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이 농장은 아무 작업을 안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올리지 않으면 이 농장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개인이 소극적 대처하거나 대처를 좀 안일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사해 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저지대다 내지는 상수 이런 곳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뭘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종덕 위원**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그 농장은 사실은 원래는 보험가입을 안 시켜 주는 게 맞거든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그분들은 보상해 줘요, 재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 농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농장들까지 커버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농장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논이 있는데 요새 논에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채소농 사들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논은 아시는 것처럼 물을 담가서 하는 농법이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가 당연히 여름이면 침수될 거라는 것 알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까지 저희들이 커버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비가 안 오면 내가 해서 이득을 보고 비가 오면 자기는 그냥 덮고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직불금도 가는 것이고 필요한 재해 예방 시설 같은 것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차관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그것을 시군에 노력을……

예를 들어 바로 이웃해 있는 같은 작물을, 저희 같은 경우에 수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지역 단위로 그것을 할증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른바 일종의 연대책임인 거잖아, 연좌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컨대, 행정구역이라는 게 정말 작은 도량 하나 가지고 어떤 하나의 농업단지가 있어서 같이 영농을…… 예를 들어 수박이 덕산 수박하고 맹동 수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울 하나 가지고…… 그냥 같아요, 그냥. 거기에 무슨 산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이것은 덕산 수박이고 이것은 맹동 수박이라는 차이만 있고 브랜드만 다를 뿐인 건데 그렇게…… 예컨대 이렇게 보험료율을 시군 단위로 매기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소위원장 이원택 짧게 대답해 주시고, 토론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인·할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군 단위로 할인·할증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할증을 매기는 건 아니고. 다만 시군 단위로 저희가 보험료율 정하는 거고요.

○임호선 위원 요율을 산출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금 개인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할인·할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대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것을 할증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은 전부 다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와 관련돼서 할증을 하지 않으면 그 보험금을 못 받는 일반 농가들이 다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보험 가입할 유인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레몬마켓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의 유지가 되려면 할인할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농가 단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나마 저희는 이렇게 농가 단위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험료율 산정도 지금 시군 하던 거를 읍면까지 일부는 좀 축소해 가지고 왔고요, 더 농가 단위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범위로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 유지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이게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쟁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조문 정리해 가면서 이견은 이견대로 남겨 두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의견이 수용 곤란 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냥 현행 유지해 주시는 게……

○소위원장 이원택 이거는 현행 유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페이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주기 단축 및 포함사항 추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수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석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5번·6번 항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석전문위원……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전문위원 수정안대로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연례적 실태조사 도입 이것은 지금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고 있

다면 이런 법적 근거를 놔두지요, 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대안으로 2조의2, 아까 기본계획 수립 그쪽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7항에다가, 1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기본계획 할 때 거기에 대통령령에다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몇 페이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2페이지의 7항에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임호선 위원**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걸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시행계획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하니까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 단위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글쎄, 매년 하는데 여기에다가, 7항에 담으면 매년 한다는 내용은 빠지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취지가…… 제가 한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그러니까 매년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차관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는 지금 기본계획 시행계획과는 전혀 약간 다른 내용인데 7항에 이렇게 넣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지금 15페이지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되 1항의 1호·2호·3호·4호 빼고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지금 5년마다 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무슨 내용을 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담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7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저의 의견은 15페이지의 ‘2조의3(실태조사)’ 그대로 놔두되 1호부터 4호까지는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송옥주 의원님 안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되는 쪽에다가 넣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차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 의견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조의3의 실태조사에서 1항·2항·3항이 있잖아요. 2항은 공표를 얘기하는 거고 3항은 대통령령으로 담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항에서 1호·2호·3호·4호는 삭제를 하고, 지금 그 말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나머지는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어차피 차관님도 지금 아까 수정안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하게 돼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일단은 쟁점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것 좀 이따가 더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17페이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는 이게 보험료율 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이거는 삭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0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석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 7항의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20페이지요. 넘어가기 전에 현행은 1명 이상이고 이원택 의원안은 3분의 1 이상이고 그런데 이게 전체 위원이 21명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재해보험심의회에서 재해보험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데 농업인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자니까 이해

관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해관계자라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여기에 심의회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심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의견들을 듣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게 그런 게 더 적합한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통로나 기구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심의회가 듣기 때문에요 심의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임미애 위원 청문회같이 듣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으면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뒤집어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그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절차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7항에다가 심의회 운영규정으로 이런 듣는 절차를……

○임미애 위원 마련한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 내용 정도는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거는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농업인의 의견을 넣기 위한 위원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은 그거인데 이해충돌이라는 말로 그 취지를 무마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행령으로 듣기 위한 어떤 절차를 한번 마련한다라는 내용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집어 넣자는 건데 이걸 어디에 넣느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7항의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정도 넣어 주면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건은 3조,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1항에 재해보험 심의 대상 각 호가 있습니다, 1항 각 호. 거기의 2호에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이거를 하나 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넣어 주시면 전

문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더라도 재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거는 그렇게 조정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7번, 보험목적물 재검토 연례화인데요. 이거는 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정기적인 부분을 강조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이제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데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재검토의 의미가 조금……

○임미애 위원 이해가 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그 의미를 살리는 건 좋은데 재검토라고 하면 이게 빼는 모양이 조금, 그 의미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한다’ 이러지요, 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요.

○문금주 위원 그 말은 조금 이상한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매년 노력하여야 한다’ 그 말이 조금……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문금주 위원 차라리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문금주 위원 ‘매년’을 앞으로, ‘매년 노력한다’……

○소위원장 이원택 앞으로 넣든 중간에 넣든, 그러면 중간에 넣는 것으로 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시 한번 주시면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지속적으로’ 빼든지, ‘지속적으로’ 대신 ‘매년’을 넣든지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하지요, 이거는 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속’이라는 표현에 ‘매년’이 다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4페이지.

○문금주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받으면 되지요. ‘지속적으로’ 받으면 되지, 그러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이원택 ‘매년’을 넣어 주시지요, 아까 정례적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24페이지.

이것 쟁점으로 남겨요? 그냥 지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이게 ‘매년 노력하여야 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서…… 노력은 계속하는 건데 ‘매년 한다’ 이게 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지속적이라는 말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에. 지속적이라는 말이 주기가 한 달 주기인지 두 달 주기인지 1년 주기인지 2년 주기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문구를 제가 다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한번 다듬어 보세요. 여기 일단 큰 틀에서는 그런 정례적인 것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기에 사실 제가 좀 추가하려고 했던 것은 ‘친환경농산물 등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좀 집어넣으려고 한 건데 지금 보험목적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등’을 넣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문구 잡을 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4페이지 6조 1항은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명문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는 책임을 갖고 하는 거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심의위의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지휘지요. 지휘와 권능을 얼마큼 바라보느냐 이런 건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된 결과를 상당히 존중하는 차원의 표현인데, 결국 지금 정부는 이건 또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도 쟁점으로 남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5페이지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25페이지. 지금 송옥주 의원안은 아까 조금 변경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6조 3항, 범위인데 이건 수용 곤란하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재해보험법인데 재해보험 미출시로 가입을 못 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해보험법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재해보험에서 이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아까 그 조항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품개발 조항은 들어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에 26페이지, 보험가입자의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27페이지에 있는 28조의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그래서 의무화를 하면 교육의 의무화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2항에서 교육받으면 ‘감면하여야 된다’ 이런 경우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감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을 받고 재해를 안 입도록 자기가 어떤 방지 노력을 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는 거니까 이것 2·3·4항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동 시설은 다 재해를 입었는데 이 시설농가가 재해를 안 입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보험을 가입할 때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시설을 설치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음 해에 그렇게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설치를 하면 그다음 해 바로, 당해 연도에 바로 할인을 해 줍니다.

○**임미애 위원** 당해 연도 할인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이미 보험은 들었는데 당해 연도 할인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박혜민** 가입할 때 시설물의 설치를 확인한 다음에 할인을 바로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해를 입었는데 다른 시설은 다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농가만,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이 농가만 노력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미 보험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험을 들 때, 이 농가가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재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다시 가입할 때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본인의 노력이 측정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경우를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전종덕 위원** 거기는 가입기간이 몇 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년이지요, 1년 단위로.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1년분 보험을 내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그건 가입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 주고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중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내 버렸으니까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다음 해는 바로 확인을 하고 해 주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라고 해서 헛갈린 것 아니에요,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시점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조치들을 다 하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제가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으면 그런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모든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하라고 권고가 되고 지도가 되어야 할 내용이지, 그렇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이것은 내가 설치를 안 해도 재해를 안 입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설치를 안 하고 재해를 안 입으면 할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에 대비해서 보험은 가입하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 투입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여기는 상습적으로 서리 피해가 있는 곳이야, 꽃이 피는 시기에 서리 피해가 있어. 그래서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물뿌리기 하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

○**임미애 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지에 과수농사를 다 짓는데 이 집은 그런 팬을 설치한 사람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장비가 있다? 할인을 해 줘야지요.

○**임미애 위원**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할인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종덕 위원**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미애 위원** 이게 사전조치에 들어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장비를 자기가 갖추고 있으면 사전조치가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사전조치에 대한 할인 적용이라는 게 농가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팬을 돌려서 분무를 해 줘서 서리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농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왕겨를 쌓아 두고 군데군데 연기를 피워서 연기로 충을 형성해서 서리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되어 있는 경우와 장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할인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이 법조항은 사실 당연히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보험료율 감면이랄까 이런 인센티브로 거론된 건데 그것을 이제 방지 행위를 했을 때 검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혹시 이런 보험상품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아마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도 조금 약간 의문이고 그래서 그 교육·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이 보험상품의 내용과 대처 방안, 방지 계획들 이런 것들도 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선택해서 나는 할래, 안 할래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오는 것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의 보험료율 감면이라는 조항의 인센티브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육에 참여하고 홍보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방안을 좀 찾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매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상예보를 보고 이게 왔을 때 주산지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일 뭐가 예상되니까 이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좀 체계적인 대응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면이라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홍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겠고, 다만 인센티브는 한번 농식품부 차원에서 그것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8페이지 보험사업자의 가입 확대 노력, 보험상품 안내의무화인데 이건 재해보험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중첩된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그다음에 30페이지의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쟁점이 형성돼 있는데 하나는 자연재해에 보험료율을 깎거나 또는 할증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취약지역, 여기가 어떤 특정한 재해에 취약한데 거기다 계속 농사짓는 사람들이 재해취약지역이 아닌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결국 보험료를 타 가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농가 단위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증이 핵심인데 정부는 할증이 불가피하되 구간을 좀 나눠 가지고, 그 구간을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할증 제도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제가 이것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 9조에 2항으로 예를 든다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이런 정도 해서 원칙은 자연재해로 인한 할증을 적용하는 건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까 교육과정을 통해서든 안내와 공지를 통해서든 방지 노력의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방안으로 성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현재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 이 조항이 2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넣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여기구 위원장님이 내 주신 3항이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시군 단위로 하거나 아래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 문제인 것이고 지금 농가별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등 조사연구를 계속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좀 문구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3항으로 새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문금주 위원 그건 그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 ‘부당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두 번째 치고 핵심적 내용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시군을 묶는다거나 지역 제한을 해서 요율을 예를 든다면 변화를 준다든가 할증을 준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농민들 입장에서 억울하니 결과적으로 이제는 농가 단위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는 기본적으로 할증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징벌적인 어떤 손해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서는 제외한다는 거고 다만 농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방지 못 한 경우에는 이건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보험 사업의 설계가 시군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농가 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계라든지 이게 갖춰져야지 그렇게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증이나 시군 단위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법에 넣게 되면 지금 있는 사업의 운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농가 단위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라, 확보를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사업을 개선해 나가라 그런 걸 여기다가

담아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그건 좀 쟁점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일 수도 있고 전제조건일 수도 있고 이행조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시군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경우에는 할증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고 법에 넣어 주셔 버리면 지금 있는 사업 체계를 완전히 다시 다 바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임미애 위원** 제가 말씀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은 제가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말만, 표현만, 전제만 바뀐 것뿐인데 그동안 여야 위원님 전부 다 할 것 없이 자연재해가 농민의 잘못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을 제외하는 게 맞고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은 예외로 한다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이 9조 조항이 보험료율의 산정이고요. 그래서 보험료율 산정을 시군 단위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경우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보험료율 산정하는 방식을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 여기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이건 쟁점으로 놔두고 좀 미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쟁점으로 놔두고 미루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32페이지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저희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검증조사 실시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저희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손해평가인력 폼목 전문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원안하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37페이지,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이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38페이지,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인데 70이냐 80이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여기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이 정도 이상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부가 50 하고 지자체가 한 30 하고……

○**이만희 위원** 다만 이것을 그냥 정부가 50 하고 자치단체, 농협하고 합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40 정도 합니다.

○**이만희 위원** 한 85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 부담은 한 15 정도인데 이 부담 자체를 이렇게 명문화시키고 정부 부담으로 100%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명시하든 안 하든 농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혜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의 역할을 좀 높여 달라 이런 거지요. 50%인데 70이나 80 정도 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 아닌가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안을 제시한 것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제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좀 이따가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을 받으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걸 연동해서 판단하자는 건가요?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연동해서…… 일단 문금주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일단 이것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정부 보험료 지원항목 추가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결국은 같은 창고에서 이쪽에 주느냐 저쪽에 주느냐 또는 창고의 금액을 늘리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약간 남겨 두겠습니다.

43페이지, 전담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지금 농금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또 출연연구기관에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면 동의하겠습니다, 정부안에.

45페이지,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원안 동의……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재해보험법과 관련된 심사는 아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쟁점을 남겨 두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자연재해를 일방적으로 다 제외하라고 그러면 아마 아까 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요즘 자연재해가 한 농가만 집중 타격해 가지고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 마을 단위나 아니면 군 단위, 전체 이렇게 해서 재난구역으로 지정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정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랄지 아니면 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할증을 제외하는 걸로 한달지 이런 대안을 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조항은 보험료율의 산정 조항이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인이나 할증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문금주 위원** 지금 농가,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자연재해를 입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입은 것도 아닌데 그걸 할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거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할증의 문제도 있고 보험료율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좀 범위를 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할인이나 할증을 제외해 주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료율의 산정 조항은 그렇게 하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그 조항을 넣고 할인·할증의 원칙을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불합리하게 손해 보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조항을 어떻게 꾸며 볼까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2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2)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15시24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의사일정 19항부터 31항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심사자료 6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9건 외에 4건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소위 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농림부가 이상고온 및 지진은 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설치와 관련해서 농림부 예산 범위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 범위와 관련돼서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의 10번부터 13번 안은 직회부된 안입니다. 이하에서는 직회부된 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은 재해대책 마련 시 기후영향평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하는 내용인데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3쪽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기존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에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1페이지, 정의 조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 저희는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부처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이것은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데 지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우박 이렇게 자연재해로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상고온,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이런 것들은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계부처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이 별도의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총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들게 돼 있고 그것도 부처별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도 그쪽에 반영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넣어 주셔도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재해

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만들고 있다, 기본계획도 만들고 시행계획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의 재해대책 포함 사항의 경우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산비에 대해서 보장하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 지원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전에 법안소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재해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모두 다 수용 곤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3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를 재해대책법에 신설하는 것은 조금 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은 이거는 재해예방 대책하고 관련되는 것은 재해대책법의 취지하고는 약간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에서는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재해 예방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 넣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기후영향평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박상웅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3페이지,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농어업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넣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박상웅 의원님 안은 매년 재해대책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넣어 주셔도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긴급·실태조사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벼멸구 피해가 있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 매년 하는 거 말고 그게 오히려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조항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긴급·실태조사’ 그렇게 해 가지고 ‘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넣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실제로 효력 있게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재해 보조·지원의 기준을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도 반대 입장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51페이지, 다른 법령에 대한 복구비 차액 지원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인건비 및 금리인하인데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재 복구비 단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표현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현행법에 따라서 지금 4조 2항 9호에 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을 기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금리인하도 따로 표현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생산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5페이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 실링 안에서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빼서 여기다가 만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농식품부 예산에서 잘라 가지고 넣어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저희가 정부 전체로 갖고 있는 예비비 주머니에서 빼다가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들 지원하는 재원을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피해보상 대책 마련도 이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우리 재해대책법의 취지로 봤을 때 복구비 지원 정도고 이게 피해보상이라고 하게 되면 보험하고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3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아까 재해보험법에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하고 아까 재해보험법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받는 걸로 하고 이 법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신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별도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5조에 치료 및 보상 근거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봉사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니까 그 조항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통계의 수집·관리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재해대책 마련해서 통계자료 수집·관리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전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따라서 NDMS,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재난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들어가야만 저희가 보상도 받고 재해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의 의미가 있고 별도로 우리가 수집을 안 해도 정

부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는 이것도 행정절차법 40조에서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좀 의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견은 요지를 짧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문 심사하면서 좀 의견 교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질의나 논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3번·34번·35번·36번은 다음 심사로 미루기로 양당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65번 농안법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요점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재해대책법 정부 동의 여부가 있었지요. 이것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양곡관리법·농안법 심사를 마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의결 절차를 밟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양곡관리법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가서 의결을 해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앞에 우리 합의가 된 것 합의 처리를 하고 중간에 보류된 부분은 보류로 놔두고 양곡관리법……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어차피 심사는 다 있어야 되니까 의결할 때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정희용 위원** 아니, 저희는……

○**소위원장 이원택** 심사를 농안법까지 빨리 의견은 의견대로 놔두고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의결 들어가시지요.

○**이만희 위원** 아니, 회의 진행하시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오늘 야당에서 양곡법하고 농안법하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중의 일부는 아마도 우리 의견에 관계없이 그냥 처리하실 것으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정희용 간사님 얘기했던 대로 일단 합의된 부분들은 먼저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희용 간사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양곡법하고 농안법하고 이것 다, 재해대책법 이런 것 필요한 것들 다 강행 처리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단 심사를 해야지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전의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상임위 여러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하셨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하는 게 회의 진행의 효율성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우선 계속 심의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어차피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심의 끝내고 전체적으로 또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일정 자체를 어느 것을 먼저 하나 상관없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농어업재해대책법 부처 의견 말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심사는 농안법까지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의결 절차에 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강행 처리를 전제로 하는 논의면 저희 여당이나 정부가 참석할 수가 없다.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서로가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되고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강행 처리가 예정돼 있고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논의를 따라 들어오는 것은 소위 운영에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의결을 하고, 강행 처리를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면 그냥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앞에 합의된 부분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회의 관련해서 자꾸 강행 처리를 전제로 이렇게 심의한다고 하는 내용은 회의 운영상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심의는 하고 심의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강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정희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윤준병 위원 그리고 심의를 마지막까지 다 한 다음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4시에 전체회의가 공지가 돼 있었던 상태고 그러면 일정이야 뭐 일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공지된 일정을 존중하면 거기까지 끊고 전체회의를 바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다음 주나 심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회의 시간을 계속 연기해 가면서 소위를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조금 제가 회의 운영하면서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합의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할 거니까요,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소위원장 이원택 양곡법하고 농안법은 지난번에 1차 심사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2차로 또 하자고 그랬잖아요. 2차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첫 심의 하는 게 아닙니다. 양곡법하고 농안법은 지난번에 심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이 두 번째 심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본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제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닌데, 뭐 마음대로 하실 텐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문금주 의원안을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부 안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됐습니다.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어쨌든 아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재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문금주 의원안 정도가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안은 문금주 의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그래도 제일 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직 정부 안에서는 협의가 다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의 조항은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금주 의원님 안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정리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9페이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재난안전법에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이게 재난안전법에도 있지만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반영되는 게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법체계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똑같은 내용을 이 법도 만들고 그 법에서도 만들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똑같이 부처별로 이것을 다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또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고 거기도 똑같이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게 저기서 빠질 수도 없고 여기서 만들어도 저쪽 게 수용이 안 되면 여기서 만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5페이지, 재해대책 사항에서 생산비 포함 문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정부 측 입장은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여기에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 의견은 기투입된 생산비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것은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지요?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에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9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인데 이것도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상 재해예방대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것은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필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만들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1페이지, ‘재해대책 마련 시 기후영향평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인데 이것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43페이지, 별도로 선포 조항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5페이지,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긴급조사’인데 여기서는 아까 긴급조사의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긴급조사로 해야 됩니다, 그냥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은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보조·지원 기준 및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생산비용·물가상승을 고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지금 수용이 어렵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하신 의원님들과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1페이지,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차액 지원에 대한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여기 ‘인건비 및 금리 인하’인데 인건비 부분은 이미 대파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위원님들 수용 가능합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건데 정부는 이것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인데요. 문금주 의원님 안에 재해대책기금 설치 문제, 재해대책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뜻은 공감이 되는데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이것은……

○**문금주 위원**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 곤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집어넣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시행령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법에 넣을 의미가 없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항에 따라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가자는 거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보험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75페이지 이 정도 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험법도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신설은 아까 보험법에서 한 것 같은 방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한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7페이지인데 종사한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치료 및 보상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중복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계의 수집·관리, 9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NDMS인가 그쪽에 이미 통계가 수집·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 그런데 그것 수용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두 번을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도 되고 저기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정부 동시체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같은 내용 시스템을 2개를 같이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금주 위원** 행안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95페이지,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명기돼 있으니까 조금 중복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서 저희가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시행일을 좀……

○**소위원장 이원택** 시행일을…… 이것도 보통 공포 후 6개월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6개월 정도로 일단 잡겠습니다.

일단 재해대책법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마치고요.

---

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16시35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37항~39항까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가로 자료 큰 것 9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위 이후에 새로 추가된 4건이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달 소위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양곡 관리와 관련해서 수입양곡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생산 조정과 관련해서 의무매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의무매입과 관련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과잉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양곡 생산자단체 근거와 관련해서 민법상 일반법인으로 가능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논타작물 한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18번에 시장격리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님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 밑의 박스에 목적 형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3번, 국회에 제출·보고 의무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새롭게 전종덕 의원님께서 공공비축 물량 확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70만t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100만t 수준의 쌀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있으신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33쪽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전종덕 의원님은 공정가격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양곡의 수요개발 및 축진에 관한 사항인데 수용 가능해 보입니다.

그다음 57페이지에 전종덕 의원님께서 동일하게 공공수급미곡의 관리·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까지 포함하면 매년 100만t 수준인데 현재 재고가 104만t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8페이지에 윤준병 의원님께서 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 현황을 보시면 현재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따라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정책처 등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행 6항에 보면 용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격리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9페이지의 시장격리 절차를 보시면 농림부 내 관계 부처 협의 등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 그다음에 농협이나 관련 농관원 절차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제9항에 농림부장관은 채권의 발행 및 종류, 이자율 등이 담긴 사항을 예산과 결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현행법상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고 보상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0페이지의 참고자료에 보면 법정 서류는 아니지만 예산 사업 설명자료로 정부양곡매입비가 이런 식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별지로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6항에 ‘보조할 수 있다’ 외에 현행법을 ‘융자 또는 보조’로 수정했고 8항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신속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그 외의 매입 방법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9항은 예산과 결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은 당연한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결산사항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상임위에 제출하되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원금, 이자, 보관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2호에 융자·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8페이지, 목적 조항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이 표현은 저희가 좀 넣기가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 목적에도 조금, 취지나 체제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대로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의 밀·콩의 경우에도 오른쪽 검토의견 맨 밑에 있는 대로 ‘공공비축양곡이란’ 그래서 ‘미곡, 밀 및 콩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의 경우에 지금 여러 의원님 내 주신 거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양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곡수급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내부 절차 정도니까 여기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2항 3호의 경우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그랬는데 정부관리양곡, 공공비축양곡에 수입양곡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행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걸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 관리 이거라고 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이고 이것은 매년 수립하는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정 자급률 목표를 정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자급률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넣는 게 체계상으로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렇게 돼 있는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의결 기능은 다 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하게 하면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거하고 다르게 정하면 다시 또 돌아와서 의결을 하고 또 돌아와서 의결하고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의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14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운용의 근거 마련 이거는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걸 좀 정리를 하고 정희용 의원님 안대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양곡,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밀·콩의 비축은 농안기금으로 하고 있고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곡관리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밀·콩의 경우에는 수급도 그렇고 농안기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것 같고 재정 여건상으로 봐서도 농안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의무수입양곡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오른쪽 검토의견 맨 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실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라든가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수립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11조(양곡의 수출입)에서도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미곡의 의무매입 여부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6페이지, 인용 법률 제명의 현행화는 수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양곡가격안정제 신설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다 마찬가지고요.

33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에서도 의결은 다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호 중에 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지금 맨 밑에 있는 것 호 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수급 안정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여기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그 위원회의 심의 내용으로 다 옮겨 가지고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준가격, 적정가격, 공정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양곡 매입가격 결정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게 ‘심의·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결도 마찬가지고 심의도 여기다 넣을 게 아니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넣으면 되니까 그 조항은 다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35페이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의결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고 심의는 동의한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각 개별 조항에 넣을 게 아니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거기마다 포함해서 규정을 하는 게 조문 체계상으로도 더……

○임미애 위원 심의사항으로는 넣고 의결은 동의 못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의결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6페이지 5조의 양곡 매입가격의 선정도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것은 여기서 넣을 게 아니고 심의가 필요하다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서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기서도 심의 내용이 필요하면 앞에다 넣는 게 나을 것 같고 의결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심의조항은 필요하면 심의 위원회로 넣고 여기서는 빼는 게 더 체계상으로도 나을 것 같습니다.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각 개별조항에 넣을 게 아니고 필요한 내용은 앞에 심의조항으로 다 빼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체계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있고 여기도 다 심의하게 돼 있는 것 이것들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다 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항의 경우에 지금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개정해 주신 게 ‘매입·판매의 절차’ 이렇게만 해 주셨는데 현행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고요.

여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현행 조항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조의4 가격안정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0페이지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41페이지, 미곡의 수급안정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심의·의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2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인데요. 이거를 신설해서, 지금 시행령 밑에 있는 걸 옮겨 주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생산자단체 대표를 몇 명 이

상하고 또 이렇게 죽 돼 있는 게 결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서 균등하게 여성도 넣어야 되고 직역도 넣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걸로 따로 하위 법령으로 미뤄 주시는 게 저희가 운용하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은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고요. 여기 필요한 내용들만, 문구만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47페이지입니다.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운용에서 정희용 의원님 안 1항·2항을 하고 임미애 의원님 3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선제적 수급조절정책 추진 근거 마련은 여기에 지금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16조의4, 정희용 의원님 안도 그렇고 임미애 의원님 안도 그렇고 ‘당해연도 미곡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선제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생육 중에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호에 들어가서 보면 당해연도에 이미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만들 게 아니고 차라리 16조 1항 3호에 보시면 여기에 선제적 수급조절계획을 신설해서 개정안에 넣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3호로 선제적 수급조절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희용 의원님 안대로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을 생육 중 수급조절계획’ 이렇게 넣도록 하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박스의 2항을 보시면 ‘매년 10월 15일까지 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3호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안정대책만 공표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양곡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은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해서 특수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은 여러 의원님들 내 주신 안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저희들은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수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에 관해서 이것도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하고 임미애 의원님 1항 4호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은 정희용 의원님 안에다가 추가로 해서 넣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공공수급미곡 관리·운용 근거 신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16조의3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는 시장격리의 법적 근거인데 아마 별지로 주신 것 같은데요. 별지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 6항에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8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라는 말은 사실은 긴급하게 하는 건데 저희가 미리 이것을 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라는 말은 빼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9항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5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월 초에 하는 경우는 그다음 해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보고하는 내용 정도로 하면 되니까 8항까지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문 정리해 가면서 의견 주시면 어떨까요? 팬참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목적 조항, 목적 규정에 정부 측에서 8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제1조(목적) 이 안 정도로 수용 의사가 있는데 팬참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낙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정부 측 의견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 측에서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것을 빼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것을 빼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밀·콩을……

○**전종덕 위원** 여기에 우리가 다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신 건가요, 혹시?

○**소위원장 이원택** 의견 있으면 지금 주셔야 돼요.

○**전종덕 위원** 어쨌든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내용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굳이 이 문구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법의 목적이.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의견차 있는 것으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나 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호선 위원** 여기 지금 모든 법안에서 적정 가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 않습니까?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하고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는 이 법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모든 법안에서 담은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단 쟁점으로 놔두겠습니다.

두 번째, 9페이지에서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부 측은 수용 불가 의견이고요. 이것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쟁점으로 놔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및 수입 절차 관련해서요. 이것은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이네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래도 여기 3조 1항이 죽 있고 또 그다음에 2항에 1·2·3호 이렇게 죽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의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의견으로 놔두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11쪽이잖아요.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기본 정신과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견으로 남겨 두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우측에서 수입쌀하고 국산쌀은 공공비축양곡으로 같이 관리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양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건데 이것이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안 개정안의 취지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 3조 자체가 원래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양곡의 수급계획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관리양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공공비축양곡하고 수입양곡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 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수입양곡에 대해서 용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쟁점으로 놔두겠습니다. 놔두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내용에서 지금 농식품부 의견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좀 중복된다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수용 곤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전종덕 위원** 어쨌든 양곡관리법의 목적 자체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안정적 공급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자급률인데 지금 정부는 자급률 목표를 세워 놓기는 했지만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의 문구가…… 자급률을 달성할 때까지의 기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좀 강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항을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도 위낙 민감한 사안들이니까 쟁점으로 놔두겠고요.

13페이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데 의결이라는 것이 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양곡수급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여기 이 부분은 의결 조항은 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 절차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결만 빼면 이것 3항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의결만 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여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여러 문구에 나오는데 각 개별 조항에 넣을 게 아니고 지금 제16조의3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옮겨 가지고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으로는 더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은 그쪽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가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근거 마련인데 정희용 의원님 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계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정희용 의원안으로 정리해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로 가야지요? 공공비축양곡 물량 확대 및 비축·운용 비용과 관련해 서 의견인데……

○**전종덕 위원** 이것도 어쨌든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공공비축미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해년마다 시장격리곡까지 합치면 거의 70만t에서 90만t까지 다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적은 양을 하고 나중에 시장격리를 하느니 전체를 보고 안정적으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3개월분인 70만t 정도는 공공비축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좀 살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16조 3항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양곡을 70만t 이상 공정 가격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달아 주신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35만t 내지 40만t 이 수준이면 매년 적정한 건데, 그것도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배 이상 하게 되면 분명히 국제적으로 시비의 소지가 있고 또 가격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조달의 원칙도 그렇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따로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70만t과 공정가격 그 얘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여기 3항에 있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별로

아마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아마 논란이 심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종덕 위원 정부의 입장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것 의견으로 놔두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밀·콩 비축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양곡회계가 아니라 농안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안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도 쟁점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의무수입양곡 실태조사…… 수입 중단 등등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

20페이지 하단의 박스에 있는 안 정도로는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문금주 위원 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합니까?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단 이 박스에 있는 하단 정도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1페이지인데, 이것은 수입쌀과 관련해서 수입 중단이나 방출 제한을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잠깐만, 이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분쟁의 우려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훈 의원님, 맨 위에 있는 3항의 경우에 ‘수확기인 경우’에는 ‘방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희들이 당연히 수확기인 경우에는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WTO나 다른 데에서는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고, 특히 수출하는 나라들이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입 양곡의 방출과 관련돼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물론 그중에 상당한 양이 가공식품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

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법으로 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남겨 둘 수 있다면 그것은 농가 입장에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담기길 바라는 것은 수입 양곡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저희가 수입 양곡뿐만이 아니라요 국산, 그러니까 국내산 쌀을 저희가 사 가지고 갖고 있는 양곡도 수확기에는 절대 한 번도 저희가 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운용하면서. 그런데 법에다 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사실 농가들도 압니다, 정부가 수확기 때 이렇게 안 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단체에도 크게 여기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시장에 낸다는 것이 밥쌀용 쌀로 안 낸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밥쌀용도 수확기 때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아예.

○**전종덕 위원** 수확기 말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확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밥쌀.....

○**전종덕 위원** 밥쌀용으로 팔고 있어요.

○**이만희 위원** 아니, 밥쌀용 쌀은 안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전종덕 위원** 아니요, 팔고 있어요.

○**임미애 위원** 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밥쌀용으로.....

○**임미애 위원** 밥쌀용으로.....

○**이만희 위원** TRQ 물량을?

○**전종덕 위원** 예, 의무수입물량에서 이거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내는데.....

○**임미애 위원** 그게 10만t인가 그렇지 않나요?

○**이만희 위원** 얼마 내요, 양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만t.....

○**임미애 위원** 4만t인가요?

○**이만희 위원** 4만t?

○**전종덕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이것은 이견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쌀을 수확기든 수확기가 아니든 간에 시장에 방출하는 것도 있는데 쌀값 하락의 원인이 수입쌀이라는 농민들의 불신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시장가격이든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중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수입쌀이 국내산 쌀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단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종덕 위원** 전체 쌀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충분히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 쟁점으로 놓고……

○전종덕 위원 예, 쟁점으로 두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가 그것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23페이지, 미곡의 의무매입 여부에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도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정부 측에서 누구 안으로 수용하는 거지요?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가격안정제 신설.

이것은 우리가 쟁점 토론을 서로 많이 해 가지고 잘 아는 건데 정부 측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도 ‘의결’ 부분은 정부 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빼고.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심의’ 부분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다음이……

○전종덕 위원 이따 논의하겠지만 가격이 명칭이 확정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그 명칭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여기 안에 수급관리위원회……

○임미애 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전종덕 위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놓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41페이지인가요?

○전종덕 위원 몇 페이지요? 41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40페이지도……

지금 41페이지지요?

○임미애 위원 이거 타작물 재배예요.

○전종덕 위원 타작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0페이지까지는 다 의견이 있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40페이지까지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41페이지, 이 부분은 원안 동의하시는 겁니까, 농식품부 의견이?

○전종덕 위원 원안 동의?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아니……

○정희용 위원 몇 페이지?

○임미애 위원 정희용 의원안이 없어요, 여기는.

○소위원장 이원택 41페이지까지……

○정희용 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해서 모아야 된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 16조 맞아요. 그 조항이지요.

○문금주 위원 위원회 구성도……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42쪽, 수급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4페이지에 있는 정희용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44페이지는 정희용 의원안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위원회 심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쪽에다가 모아 가지고 정리하자는 의견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돼 있고 구성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을 법에서 이렇게 넣지 말고 그냥 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수…… ‘그 밖에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43쪽에.

43쪽 우측하단의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45페이지 가서 논타작물 재배 그거는 정희용 의원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47페이지 가서 미곡수급관리시스템도 정희용 의원안에다가 임미애 의원안을 결합시키는 거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님 3항을……

○임미애 위원 3항을.

○소위원장 이원택 3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9페이지,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해서는 정희용 의원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다 정희용 의원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희용 의원안에 ‘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의 생육 중 수급조절 계획’, 3호지요? 그거 말씀이 계셨던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기, 그러니까 선제적 수급조절 16조의5를 정희용 의원님 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있는데…… 16조의4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이 표현이 모호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취지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자고 하시는 목적이니까 50페이지에 있는 정희용 의원님 안, 16조의 1항 3호에 ‘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의 생육 중 수급조절 계획’ 그것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6조의4호 그……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9페이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중간박스에 있는 2항 그것은 ‘10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52페이지,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쟁점이 있는 것으로 하겠고요.

54페이지, 15번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인데 이것은 정희용 의원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겠고.

56페이지도 정희용 의원안에다가 임미애 의원안을 결합하자는 거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2항이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내 주셨는데 2항을 수용하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정부 대안 문구 정도로 ‘우수 원료’로 바꿔 가지고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공공수급미곡 관리·운용 근거 신설인데 ‘공정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예.

그러면 친환경 재배 우선매입이라든지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이런 것도 다 못 받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급식에 사용하거나 그것은 이 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긴 하는데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한 미곡 우선매입안 이것은 어때요?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여기다 법에 꼭 넣으실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은 조금 그래도 가격이라든지 수급상황이 좋고 다른 쌀이 어려울 때는 친환경은 덜 사고 이것을 더 많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탄력성 때문에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는 게 더 운용하기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58페이지, 시장격리의 법적 근거 이것은 ‘사전동의’가 아니라 ‘보고’로 하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보고하고 사후……

○임미애 위원 ‘미리’ 자를 빼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미리’ 빼고 지금……

○소위원장 이원택 ‘미리’를 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9항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9항을 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여기에 ‘미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에 보고한,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하는데 이것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공비축으로 결정하고 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추가격리가 필요할 때 그런 건데……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추가격리가 필요할 때 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보고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하게 되면 한시라도 급한 시기에 이게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미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매입규모나 매입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국회가 생각한 상임위가 생각하는 규모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와 상의해 달라라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미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될 때 일단 정부가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이야기해서 추가로 또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보고 먼저 하지 말고 미리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해라 그러면 시기상 조금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부가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표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시지만, 이게 결국은 이걸 시행하는 건 농협이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거는 조금 쟁점으로 놔두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충분히 알겠고요 현실감 있는 의견도 알겠고, 쟁점으로 놔두겠습니다.

밑에 9항은 지금 정부 측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이것 어떻든 결과보고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거는 항상 하니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사는 일단은 합의된, 공유되는 건 공유대로 의견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5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17시26분)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법안의 마지막 의사일정 중에 제50항부터 제65항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먼저 50항부터 63항까지, 10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달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은 현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손실 보전 규정, 상한 가격 예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과잉 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정부 노력 담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 폭등 시의 체계자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축관리 관련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도는 의무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부칙은 1년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조는 현행 유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계약재배 시 생산자단체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우측 검토의견 박스입니다.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대 조치’를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농림부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상한가격 예시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농가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항에서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했고요, 5항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조절 관련 노력 의무를 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차 소위 논의(안) 2항에 보시면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농안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이병진 의원님 안을 수용하고.

18페이지에 체계자구 수정의견인데요, 4항에서 농림부장관이 의견수렴을 수행하고 이를 위탁사업자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19페이지에……

○**문금주 위원** 1차 소위 한 것 이것 다 해야 됩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빨리하시지요.

○**문금주 위원** 그냥 쭉쭉 넘어가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추가된 것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추가된 거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우리가 2차 소위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추가된 거는 송옥주 의원님하고 지금 이병진 의원님 건데요.

그러면 1차 소위 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병진 의원님께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있는데 법률로 격상하는 거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없는데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이전에 회의 실적 저조로 협의체로 전환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0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 등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지금 쭉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 의원님도 발의를 하나 추가로 하셨고 김선교 의원님도 추가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적에서 이거는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어기구 의원님 발의하신 안으로, 그거는 그렇게 수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1차 소위 논의(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9페이지가 이거는 ‘계약생산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으로 하락했을 경우에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재배·계약생산은 주로 산지유통 조직하고 농업인하고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를 저희가 필요한 것 재정사업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에 넣어 가지고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할 때 저희들이 출하 선도금이나 이런 것들 용자해 주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어기구 의원님 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소위 논의(안)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고 하한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상한가격까지 하는 것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한가격을 하고 소비자 보호까지 아마 지금 의견을 넣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법이 농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게 그 법이기 때문에 이것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이것까지 이 법에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수급, 소비 이런 쪽에 대한 지출을 우리 농식품부 예산으로 저희들보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되니까 굳이 여기다 넣지는 않

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행법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매나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이제 농산물 전체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채소류의 경우는 저희들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생산을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16페이지,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이게 농안법에다가 소비자 보호 조항을 넣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인데 이 부분은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부수용’ 돼 있는데요, 이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비축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나 GATT 위반소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사후관리 품목을 국내생산·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수입농산물까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으니까 전체 농산물로 사후관리를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조정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31페이지, 가격안정제도 관련 심의위원회의인데 이거는 최저가격 보장하고 연관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6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도 최저가격안정제 도입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조절위원회, 39페이지입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시행규칙에 있는 걸 법률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이거는 여기의 내용 중에 예시가격 이런 것들 쭉 가격이 있어서 굳이 여기에다 법에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은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에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1차 회의 심사 때 쟁점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혹시 김선교 의원님 건이 2건이 더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만희 위원** 같은 안이니까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직회부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정희용 위원** 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를 좀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용 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이만희 위원** 아니, 법안소위 운영을 예측 가능성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희용 위원** 저녁에 다들 일정이 있으실 텐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래도 전체회의를 식사 후로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만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법안소위 마치고 나머지 행정실 준비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될 텐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전체회의를 식사 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만희 위원** 다음에 뭐하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소위원장 이원택** 2건에 대한……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저녁 드시고라도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다른 일정들 다 빼 개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정희용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려운 상황은 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늦어지면 위원님들 일정을 맞추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지금 통상의 소위 시간의 예측 시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일정도 다들 있을 텐데 전체회의 하고 아래 가지고 너무 늦게 11시, 12시 이렇게 끝나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 두 분 간사님들이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소위 하루종일 했지만 아직 하나도 의결 못 했잖아요. 한번 읽어 본 거거든.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제 의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법안심사……

○**이만희 위원** 상의하셔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식사 후에 다시 재개를 하시든 간에 결론을 좀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두 가지 법안은 다음에 하게, 그리고 의결 들어가지요.

○**정희용 위원** 포함해서 같이?

○**소위원장 이원택** 두 가지 법안은 다음에……

○**이만희 위원** 아니, 두 가지 법안이라는 게 이것 오늘 같이 논의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희용 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게.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면……

○이만희 위원 이거를 논의할 때 같이 하셔야 되는데 따로 빼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두 가지 법안까지 심사하고 제가 볼 때는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의결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식사 후에 하는 걸로 제안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정희용 위원 64번, 65번이 빠졌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빨리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64번, 65번 별지 11번 자료입니다.

○이만희 위원 상정은 다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상정은 됐습니다.

11번 자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주산지협의체 설치 시 자조금단체 참여를 위한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경우 관련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조금 조성 품목은 18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자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림업관측 분석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은 현행의 기상정보 등 공급측면 분석 외에 유통경로별 소비량 등 수요량도 분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 현황을 보면 36개 품목에 대한 생산 및 9개 품목에 대한 소비 정보가 제공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거래 활성화와 관련 김선교 의원님께서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지원 사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채소가격 안정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로 하고 관련 목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 물량은 7개 품목의 전체 생산량의 17%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수급안정사업으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하 조문은 가지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반영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페이지, 주산지협의체 설치 관련해서는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조금단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는 이만희 의원님 안, 김선교 의원님 안이 내용은 사실상 똑같고 김선교 의원님 안의 ‘이하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축약만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선교 의원님 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관측 분석범위 명확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는 김선교 의원님 안 그대로 수용합니다.

13페이지는 이것은 저장성 없는 채소류 등 불안 있을 때니까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급안정사업도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급관리센터의 설치도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이하 가지 조문 조문 정리는 김선교 의원님 안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아까 기존에 우리가 1차 때 농안법 심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희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 법이 있는데 먼저 농안법 관련해서 1차 심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목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견이 있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좀 합의된 것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견은 지난번 토론 때도 좀 쟁점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생산자단체 손실 보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기구 의원안에 동의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8페이지에 있는 3항, 4항은 1차 소위 논의안이 어기구 의원님 안하고 똑같고요.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한데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9페이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 3항, 4항은 그렇게 수용하고 9페이지는 수용이 어려운 걸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차 소위 논의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1차 소위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는 이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것은 이견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도 수용곤란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똑같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이제 4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5페이지 9조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1항 수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항은 수용이 어렵고요, 밑에 4항, 그러니까 5항 들어간 것.

○**소위원장 이원택** 5항이 들어간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1항하고 4항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저희가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용이 곤란한 걸로 보여지고 17페이지는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인데 이것은 국내외 농산물을 합쳐서 했을 때 수용 가능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그것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과태료 부분은……

○**소위원장 이원택** 과태료 부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9쪽 정부가 수용하는지 반대하는지 말씀이 없으셔서……

○**소위원장 이원택**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불수용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31페이지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도 불수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가격안정제 도입 이것도 불수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보여지고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문제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또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불수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와 합의된 것하고 이견은 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만희 의원님하고 김선교 의원님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3페이지는 이만희 의원안을 수용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주산지협의체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 다음에 5페이지는 김선교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7페이지에 농림업관측 분석범위에서는 이만희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11페이지의 계약거래 활성화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선교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상기후, 13페이지 이만희 의원안을 수용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15페이지 이만희 의원안을 수용하는 거고 16페이지도 이만희 의원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나머지 조문 바꾸는 것은 김선교 의원안으로 됐는데 이만희 의원님하고 김선교 의원님 안 저도 보고받으면서 쭉 내용적으로 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오늘 심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심사는 좀 마쳤는데요. 농림법안소위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것대로 이제 정리해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심사했던 순서에 입각해서 좀 의결해 가겠습니다.

먼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요.

오전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또 원안은 원안대로 아까 이견이 있었고 조율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문구 조정하는 안을 주시겠어요? 문구 조정해서 해야 될 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하고 협의해서요, 규제개선 신청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 몇 쪽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푸드테크법 소위 심사자료 49페이지에서부터 50쪽인데요.

○**임미애 위원** 문구가 조정된 법안이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님들 이것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거의 준비는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말씀해 주세요.

○**전종덕 위원** 내용 최종 문구를 봐야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내용을 하면 나머지는 자구 문제니까 자구는, 표현은 준비가 돼 있

습니다.

○정희용 위원 정리해서 다시 해요. 다시 하자고 주장하세요, 전종덕 위원님.

○문금주 위원 아니, 아까 다 합의 봤어. 자구만 조금……

○소위원장 이원택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46쪽부터 48쪽인데요.

아까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4항부터 8항 까지는 필요 없다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입법례를 확인해 보니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항부터 8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한번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의견 조율이 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는 차관님께 보고가 됐다고 들어서……

○정희용 위원 몇 페이지 이야기합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소위 자료 46페이지 4항부터, 소위 자료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희용 위원 46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46이 빙 껍데기인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죄송합니다.

소위 자료 49페이지에서 52쪽인데요. 50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면서 차관께서 3항 이하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총리실의 규제개혁……

○소위원장 이원택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데 3항부터 이 조항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판단했던 것은 여기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이 법에 의해서 또 규제개선 검토하고 이런 것들 쭉,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개선이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거기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 그것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얘기해 주세요, 바로 좀 확인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6페이지의 영업의 신고 관련해서 차관께서, 7조 5항에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있고 차관께서 변경신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 입법례를 다 확인해 보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변경신고 때 완전히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변경신고 할 때 자기가 바로 직접 개신까지 바로 해 버릴 수 있게 절차를 만들면 복잡하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하고 저희가 하위 법령에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 안 할 수 있

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아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입법례를 통해서 규제개선의 신청과 관련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절차’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제 쟁점 사항은 정리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5번, 6번 송옥주 의원님 안은 계속 심사, 보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서천호 의원 법안 심사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된 부분도 있고, 합의된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업재해보험법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또는 양곡관리법 또 농안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의원님하고 김선교 의원님의 법안은 의견이 없어 보여서 일단 의견이……

○이만희 위원 농안법 말입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지요. 지금 전체 법안하고 병합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법안만 병합된 거잖아요.

○임호선 위원 그래도 같이 병합해서 처리해야지.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만희 위원 하면 같이 하는 게 맞겠지요.

○임호선 위원 같이 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법안은 따로 상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만희 위원 같이 상정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닙니다. 지금 50번부터 같이 일괄 상정됐고요. 제가 설명을 나눠서……

○소위원장 이원택 같이 일괄 상정돼 있어요? 저는 여기 칸막이가 있기에 따로 상정돼 있는 줄 알았네요.

○임호선 위원 그래도 같이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동일 제명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제 이견이 있는 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해보험법하고 재해대책법 또 농안법 또 양곡관리법이 이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1차 회의 때도 토론한 것이 있고 또 계속 이게 현안이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의결을 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보험법 또 재해대책법 또 농안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은 일부 내용 중에 의견이 좀 모아진 부분도 있고 또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서 의견이 안 모아지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항들 중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시더라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계류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법안들이 합의 안 돼서, 이번에 1·2차 논의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다 종결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발 또 더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하나의 법안을 어느 조문에서 동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1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어쨌든 연결성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리가 되려면 한꺼번에 법안 전체가 합의에 이르고 처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만희 위원 말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막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주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예측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이런 내용 자체가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표결이나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만희 위원 사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쟁점도 어떤 내용이 서로 입장이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도 했고 또 입장도 아마 많이 서로들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쌀값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우리 농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농민의 기대나 국민의 기대에 열추 부합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논의도 하고 더 숙고도 하고 또 의견도 더 조율해 나가는 기간을 갖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쌀값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정 현안이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농민들의 기대에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는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내는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런 기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고 또 정부의 선의에 맡기거나 정부의 능력에 맡겨서 일 처리되도록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구현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우리 국회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의결해서 국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국회의 입장이나 국회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통해서 입법적인 노력을 국회에서 최대한 하고 있다 하

는 점을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격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문금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문금주 위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농해수위에 처음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에 상당히 기회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질타도 많이 하고 또 제안도 많이 드렸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은데 나름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당정 회의도 별씨 몇 차례 했고 대책도 발표하고 했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안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이번에 쌀값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가 봄에서는 그 대책이 전혀 효용이 없었고 또 일단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됐든 더 이상 농민들 실망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맞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사실은 제가 법안소위하면서 쟁점이 있는 법안들 죽 검토를 하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안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려고 대안을 만들고 담당자들하고 밤샘하면서 문구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정말 어디라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재해대책법에 생산비 보장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재해보험법에 보조율을 70%, 80% 명시하는 거라든가 재해대책법의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내용이라든가 농안법의 최저가격 보장이라든가 양곡법의 의무매입 조항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이 되면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로는 정부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계

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법이 만들어져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법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님한테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법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미연에 막고 싶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해서 반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차관님이 지난번 법안 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나 본질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또 그 옆에 같이 계신 국장님, 과장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은 사실 국정감사 전부터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타협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이나 쌀 가격이나 이렇게 파동이 오고 또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저도 너무 안타깝고,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과도 대화를 나눴고 또 정희용 간사님하고도 대화를 일정 부분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법과 농안법과 관련해서 쌀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더 하향되고 또 정체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농민들 입장에서 저한테 와서 양곡법·농안법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제가 지난번에 한농연 집회 또 엊그저께 전농 집회에도 갔는데 지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농민들한테 실질적 이익을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타협을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건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가 사안사안별로 마음에 안 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해보험법에서 예를 든다면 아까 자연재해에 따라서 할증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재해대책법에서는 사실 생계구호 수준에서, 좀 더 예를 든다면 기투자된 생산비까지 복원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봤던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양곡관리법에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가격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번에 쌀값이 제대로 잡히고 또 정부와 여야의 노력으로 잡힌다면 그 가격차액 부분을 저도 빼고, 제가 원내지도부랑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결단해서라도 타협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농안법, 양곡관리법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들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다고 해서 차관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차관님이 노력하는 모습 다 보입니다. 다 알고 있고, 그게 보여서 저희들도 좀 더 타협으로 가려고 했던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만희 위원님 손 들었고 윤준병 위원님 손 들었는데요 두 분 말씀 듣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일단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농가 전체의 한 51%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차관님,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지금 80kg 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18만 2000원……

○**이만희 위원** 한 3000원 정도 되지요, 좀 올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3000원 정도……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농가라고 그러니까 100만 농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50만 농가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야당 위원들이 많이 주장하셨던 내용 중의 한 가지가 20만 원을 맞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50만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1만 5000원과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이만희 위원**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금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조 이상 들 것 같은데요.

○**문금주 위원** 1조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만희 위원** 사실은 정부 당국이, 과거에 쌀 목표가격제 할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는 단순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정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하든 쌀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밀이나 콩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양곡법에 있어서 이런 식의 보장은 이 방향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해대책법이나 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내용은 정부의 입장, 존경하는 정희용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 쟁점과 관련돼서는 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의 요는 현재 제도적인 틀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

인 의지만 조금 보이면 분명히 이런 실제 제도화돼 있는 최악의 수단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내용들이 구현이 안 된다,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근저에 깔려 있지요.

양곡관리법, 매년 시장격리 하면 1조에 상응하는 시장격리 비용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선제적인 생산 조정하고,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8만ha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해내면 굳이 시장격리 작동이 안 되는 요건을 정부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대로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초래되고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급이 나름대로 조정이 됐다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가격이 농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정부 의지가 약하거나 또 실기했거나 그런 결과가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의 의지를 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방법은 최후의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정부가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다, 이게 농민들의 기대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 의무격리 이게 만능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 제도가 제도화가 돼야 사전적인 생산 조정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동원해서 농정을 제대로 관리해 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보장한 게 아니다 하고 빨 빼고 금년 들어와서 수확기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농정 책임자가 약속하라고 그래도 약속 못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 하다 실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려면 그걸 담보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1조 원이 들지 않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제도적인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쌀값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담보해 줘라, 이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재해대책법도 마찬가지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뜻도 알지만 정부의 결과적인 무능이나 또는 결과적인 무책임이나 이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우리가 국회에서 담보하는 방법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농민들이 원하고 농민이 바라는 그런 농정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내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나 농민들의 기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기대하고 정반대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이 과잉이 되고 가격이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저희가 8만ha를 줄이자는 얘기도 그랬었고, 과잉이 되는 걸 못 막았던 건 정부가 강제로 쌀 심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잉되면 추가로 격리해서 사 주고 사 주고 해서 가격을 계속 맞춰 줘 오니까 사실은 농가들이 쌀 이외의 다른 걸로 갈 유인이 별로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이 제도까지 도입이 되면 사실은 내년에 8만ha를 줄이자고 하는 그 것도 저희들이 담보하기가 힘든 것이고요. 다른 조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정부가 감당하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고 그런 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곡하게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제가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차관님의 어떤 진정이나 그 뜻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분명한 생각과 판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30만 농민들의 삶과 미래가 눈앞에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이견이 계속 있어서 더 이상 논의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또 합의가 안 된 내용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그런 당론에 기반해서 처리할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까지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표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희용 위원 22대 국회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소위에서 표결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적을 하시되, 같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만희 위원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안이 단독으로 야당의 최종 안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재의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똑같이 법안 저게 안 되는 것인데.....

○윤준병 위원 아니, 그래도 반대.....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도 앓아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정희용 위원** 차관님, 나오세요.

우리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정부위원 퇴장)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결을 하시더라도 어떤 안으로 의결하는지는 알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찬반, 가부 여부를 물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으로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민주당 법안인 거고, 오늘 상임위에서 계속 의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시든 조항별로 이 내용으로 의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찬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는요, 이걸……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농어업재해보험법 소위 자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은 합의된 대로 저희가 준비를……

○**전종덕 위원** 조항별로 쭉 읽어 봐 주세요. 누구 안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된 안을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논의만 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그 합의된 내용은 공유가 됐던 거고요. 아까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쟁점별로.

○**전종덕 위원** 아까 합의된 대로 다 통과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문금주 위원** 아까 계속 계셨잖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아까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된 항목이 있고 의견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 항목이 뭐냐하면 할증과 관련된 부분이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쟁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재해는 제외한다는 거지요.

다만……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결할 문구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그 문구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문구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종덕 위원** 의견만 있다고……

○**소위원장 이원택** 합의된 안 말고 쟁점이 된 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방금 말씀하신 쟁점이 된 안은, 재해보험사업자는 할증과 관련해서 보험율 산정……

○전종덕 위원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전종덕 위원 페이지, 몇 쪽.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건 페이지가 없고……

○전종덕 위원 페이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 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것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제가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다 조항별로 심사를 했는데 또 다시 조항별로 가자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까 심사를 했고 이제 쟁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전종덕 위원 쟁점이 그것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할증 관련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몇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의결할 때 무슨 내용으로 의결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원 법안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 설명을 또 드려야 되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예를 든다면 정의 개념 그것 삭제하기로 했지요? 이렇게 다 설명해 달라는 건가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으로, 수정의견으로 다 하고 쟁점은 할증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요. 아까 그 핵심 쟁점이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재해보험법의 쟁점이 한 여섯 가지 있었는데요.

15페이지의 연례적 실태조사는 문구를 조정해서 매년 농어업 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항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항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의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는 넘어가고요.

30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문입니다. 할증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8쪽 이건 이원택……

○전종덕 위원 이건 누구 걸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80%인지 70%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문금주 위원 이건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 안으로 가게 되면 정부안을 받기로 했잖아

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래서 38페이지는 아까 그 할증 관련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문은 빠지는 겁니다. 현행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41쪽도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할증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한 4건 정도 그때 보류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26페이지의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돼서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은 아까 그 긴급실태조사로 자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의 보조·지원의 기준 및 범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합의가 안 돼서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및 금리인하의 각종 자세한 사항들도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건 다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은 위원님들께서 쟁점 사항이 지금……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또 전종덕 위원님이 할 말씀이 계실 것 같으니까……

재해보험법하고 재해대책법 쟁점에 위원님, 동의되십니까?

○전종덕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대로 보지도 못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아까 같이 심사를……

○문금주 위원 아니, 아까 심사 다 하셔 놓고……

○전종덕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논의를 지금 진행하는데 쟁점으로 남겼고 최종안이 뭐다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야지. 그동안은 쭉 논의를 하셨는데 오늘 논의하면서 쟁점으로 남겼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요.

○전종덕 위원 금방 확인했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그래서 설명 다 해 드렸더니 또……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해 드리겠고,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도 쟁점을 좀 정리하지요. 같이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가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은 쟁점이 도출된 게,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11개 이상의 쟁점이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못 하고 다 민주……

○ 소위원장 이원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곡관리법 8페이지 보면 목적 규정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해서, 대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반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의 이익을 넣는 문구로 집어넣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그때도 임미애 의원안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 윤준병 위원 그건 동의한 것 같은데요, 정부가?

○ 전종덕 위원 아니, 밑에 축산…… 농식품부장관……

○ 소위원장 이원택 수정동의를 했지요.

○ 전종덕 위원 수정동의를 한 거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예.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1조도 정부가 수정동의 했는데요.

아, 1조는 참……

○ 소위원장 이원택 1조는 우리가 이견으로 남겼고.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집어넣는 것에 정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 문금주 위원 수정동의 했어요, 수정동의.

○ 전종덕 위원 여기는 수정동의 들어갔는데……

○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아니요.

○ 윤준병 위원 동의했던 걸로 들었는데?

○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수정동의안은 다른 내용입니다.

○ 윤준병 위원 하여튼 수정동의 했든 안 했든……

○ 문금주 위원 아까 오른쪽 하단에 3호 그렇게 했어요.

○ 소위원장 이원택 밀·콩을 지원하는 걸 양곡회계로 쓰지 않고 농안기금으로 쓰는 걸 동의하는 건가요? 그것은 동의 안 했지요?

밀·콩을…… 제가 좀 헷갈리네. 아까……

○ 윤준병 위원 양곡관리법……

○ 소위원장 이원택 밀·콩이 양곡 대상으로 들어가면 양특회계를 쓰는 것 아닙니까?

○ 윤준병 위원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원래 그런 거잖아요.

○ 윤준병 위원 법체계상.

○ 소위원장 이원택 법체계상.

○ 윤준병 위원 난 이쪽에 넣는 것은 다 동의한 걸로……

○ 문금주 위원 저도 수정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 윤준병 위원 동의한 걸로 이해했어요.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농식품부가 이 안을 제안했는데요. 이걸 쟁점 사항으로 넣자 이

령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미애 의원안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금주 위원 그러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는 ‘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오늘 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임미애 의원님 안이 아닌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임미애 의원님 안이 아니라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수정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아, 수정안으로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지금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간다는 건 기준 안으로 가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 3호에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돼 있는데요. 미곡 다음에 가운데 점 밀 그다음에 콩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이 안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동일한 안이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및 수립 관련 절차 변경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인데 다른 의견 없으면…… 저희가 이걸 수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의결만 수용을 했던 거고 심의는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예, 심의는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것도 임미애 의원안으로 해서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가 다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 심의 똑같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의 정부 양곡 보관시설,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근거 마련.

이것은 정희용 의원안으로 저희가 의결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도록……

○문금주 위원 정희용 의원안으로 했잖아요, 아까. 농림부도……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그렇게 협의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저는 한꺼번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쟁점을 확인시켜 주시면 한꺼번에 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해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니까.

○전종덕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조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19페이지의 공공비축양곡 물량 확대 및 비축·운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 아까 제가 밀·콩을 양특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그 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물량 확대 여기에 전종덕 위원님이 70만t을 주장하셨는데 왜 70만t이냐, 물량을 국제 기준보다 확대해야 한다, 신정훈 의원안이 있고 박희승 의원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종덕 위원 저는 당연히 제 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70만t으로 명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기하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나중에 우리가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정훈 의원안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소위원장 이원택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의무수입양곡 실태조사, 수입 중단, 국내 방출 제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어떻게 냈지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네……

○전종덕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0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3페이지도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도 지나가는 거지요,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다 임미애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양곡가격안정제 신설에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임미애 의원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쟁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가 나와 버렸기…… 저희가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문제라면 상관없는데 기준 가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공정가격을 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15조의2를 임미애 의원안으로 동의하는 문제는 공정가격과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윤준병 위원 용어 사용 가지고 뭐 쟁점이 있나요?

○전종덕 위원 그래서 대체로 저희도 지금 제출한 안을 많이 논의했고 사전에도 논의했는데요. 공정……

○소위원장 이원택 공정가격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뒤에 가 보면 위원님 이 제출한 공정가격의 개념이 그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전종덕 위원 그래서 공정가격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건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으로는 임미애 의원님께서도 내셨기는 했지만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비 플러스알파를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담는 거고요.

공정이라는 표현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요.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주셔야지……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개념은 농민들의, 생산자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게 공정가격 의미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아까 후행에……

○전종덕 위원 그리고 공정가격을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검색해 봤거든요. 공공비축미 가격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공정가격이에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정 무역 이런 얘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커피 때문에.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더라도’, 시장을 지배하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지위가 남용되거나’, 남용돼야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갖고 있는,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격도 이 법이 갖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이라 표현하는 문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단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것이 사회적 단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해진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이 공정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법의 취지에 기초해 보면 공정가격이 저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임미애 의원님이 기준가격으로 정했던 그 기준과 다르지 않으니 제가 제출한 공정가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정가격이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 이것을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 놔두고 또 정리하자고요.

○전종덕 위원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소위원장 이원택 사실 이 공정가격 때문에 지금 건건이 보자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윤준병 위원 그렇습니까?

○전종덕 위원 아니요, 다른 안도 저희가…… 아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을 심사할 때 책임 있게 법안을 심사하려면 무슨 내용으로 심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제가 그런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당연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가고 쟁점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종덕 위원 예,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여기는 공정가격 쟁점은 놔두고요. 또 설명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또 다 공정가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전종덕 위원 가격이 나온 것……

○소위원장 이원택 심의에서 의결을 빼는 거지요, 33페이지?

○전종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임미애 의원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중에 기준가격이냐 공정가격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41페이지는 원안 동의인가요?

여기도 다 임미애 의원안으로 가고요.

아까 45페이지도 그냥 임미애 의원안으로 가시지요.

○전종덕 위원 몇 페이지 하신다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45페이지.

○전종덕 위원 45페이지는 아까 정희용 의원안으로 한다고……

아, 그것 상관없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의원안인데……

정희용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데 복잡하지 않나요?

○전종덕 위원 차관님이 있을 때 합의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여기 행정실에, 수석전문위원실에 물어본 거예요.

괜찮겠어요, 정희용 의원안 정리하는 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희용 의원안은 지금 임미애 의원안을 좀 덜어내는 거라서요 정리하는 데 뭐……

○소위원장 이원택 시간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전종덕 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의 그것 전체 심의할 때 이걸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그것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건 저 여기 다 표시돼 있어요, 지금. 다 표시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희용 의원안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4, 45는 정희용 의원안.

○소위원장 이원택 44?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4페이지, 45……

○소위원장 이원택 45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45페이지가 정희용 의원안이 아닌가?

○전종덕 위원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16조의4하고 16조의5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이것은 지금 정희용 의원안은 16조의 내용은 같은데요. 임미애 의원안이 더 많은 내용을 쓴 거고요. 정희용 의원안은 논타작물을 좀 간략하게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임미애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임미애 의원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고 그다음에 47페이지,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관련해서 이건 정희용 의원안하고 임미애 의원안으로 혼용됐는데 이것도 임미애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의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인데 이 부분은…… 또 이 것도 임미애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방안도……

○문금주 위원 이건 우리가 수용했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뭐……

○문금주 위원 아니, 정부하고 얘기한 걸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의원안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정희용 의원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리하는데 제가 펴놓은 걸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의 임미애 의원안하고 정희용 의원안이 혼용됐거든요. 이건 임미애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전종덕 의원님의 공정가격 조항이고요. 이것은 이견이 좀 있었던 안이고.

그다음에 시장격리는 뒤에 58페이지는 보고하도록 한 거지요? 그리고 결산 보고하도

록 한 거고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부칙은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후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시장격리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었는데요, 그걸 윤준병 위원님께서 수용……

○**윤준병 위원** 나는 수석전문위원 안에 찬성합니다.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해도 이건 우리가 국회 통제를 받도록 양곡 관리에 대한……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동의하는데……

○**윤준병 위원** 미리 해야지.

○**소위원장 이원택** 미리?

○**윤준병 위원** 예, 미리.

○**소위원장 이원택** ‘미리’ 넣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미리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문금주 위원** 9항은 삭제.

○**소위원장 이원택** 9항은 삭제하고.

○**윤준병 위원** 9항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 어차피 결산에 다 보고가 된다고.

○**윤준병 위원** 아니, 그것 말로만 하는 것하고…… 결산 보고하는데 결산에 보고할 요량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어야 보고하는 것이지.

○**문금주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1년 후인가요, 6개월……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1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1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57페이지 보면 전종덕 의원님 안에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개념으로 보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아까 우리 양곡관리법 16조 지금 위법적인 요소 치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최소한도 내년에…… 지금 위법적인 내용 치유되는 것 있잖아요, 예산 사이클이 금년 지나고 내년 1월부터…… 이건 준비 상태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 시점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다른 건 준비가 좀 필요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

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만 시행 시기를 별도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시장격리만.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듣다면 기준가격으로 돼 있잖아요. 기준가격(공정가격)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공정가격(기준가격)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논쟁하는 데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공정가격(기준가격), 어떻습니까?

○**임미애 위원** 굉장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금주 위원** 저도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그런다고 갑자기 그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나온 용어를 갖다가 여기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전종덕 위원** 저는 갑자기 들이밀었다는 말씀은 좀 적절치 않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전종덕 위원** 제가 법안을 낸 지가 언제인데요.

○**임미애 위원**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전종덕 위원**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안 보신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다수가……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다수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기준가격(공정가격)으로 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아니, 공정가격(기준가격)으로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취지에 다 동감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항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제가 만나 본 농민들은 공정가격·기준가격 안 나눠요.

○**전종덕 위원** 제가 양곡법 발의한 것 말씀드렸지만 8개 농민단체와 함께 발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법안 내용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다 양보하고 한 가지만 포함하자고…… 그것만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팔호 열고 닫고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반영을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면 이 법안을 저희가 지금……

전종덕 위원님, 이걸 하고 또 1시간 정도 문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전체회의 모이고……

○**전종덕 위원** 제가 팔호 열고 닫고 거기까지도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공정가격 팔호 열고 닫고……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것은 저희가 양보한 거지요.

○**전종덕 위원** 아니, 나머지 사항과 관련해서 다 했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우리가 양보한 거고, 이것을 공정가격(기준가격)으로 하려면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기준가격(공정가격) 하시자니까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제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단어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훼손된다는 생각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단어는 가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에 어디 농민들의 피와 땀을 제대로 평가해서 담기에는…… 사실 기준가격이라는 용어가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정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저는 담자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거기다가 괄호 치고 공정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말씀대로 오염시키는 것이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다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법을 농민들이 그토록 원했고……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본 농민들은 몰라요.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원했고, 양곡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여기 소득 보장에는 농민들의 땀의 가치가 녹아나는 그 가치가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량자급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더 좋은 표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표현이 여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이랑 농어업재해법 할 때 생산비를 보장해야 된다는 문구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산비 보장뿐만 아니라 농민의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전종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이 법안들이 지난번에 1차 심의 때 한 번 걸러진 상태에서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강행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2차 심의 때 갑자기 들어온 내용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별도로 논의한 대로 공정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쓸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반영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오늘 이 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더 논의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 우선 우리 임미애 안으로 가고 공정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숙의를 해서 처리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1차 심의 때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내용들이에요.

○전종덕 위원 1차 심의 때는 다른 의원님들 법안도 다…… 이게 몇 개가 들어왔지요? 지금 6개인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심의를 한 것이고요.

○문금주 위원 그런데 이건 중요한 개념 정리가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전종덕 위원 이 법안은 이미 몇 달 전에, 8월 달에 발의된 법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안 한 것이라서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으시고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는 하나의 단어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공정가격(기준가격) 이렇게 해서 오늘 의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물가상승률과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기준가격인데 공정가격에 대한 개념도 지금 바로 이 개념하고 똑같다는 개념입니까?

○전종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동일합니까? 그러면 뒤에 공정가격이……

○전종덕 위원 그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수정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수정해야 돼요.

○전종덕 위원 예,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법안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떤 것…… 다시 한번요.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이 ‘공정가격이란’ 이렇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내용이 기준가격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러니까 뒤에 공정가격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건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그리면 어떻게 반영을 해서 삭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정가격을 어디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기준가격이라는 용어에 공정가격이라는 내용을 넣겠다는 거고요, 개념상 그 공정가격 이퀄 기준가격이라는 것이고. 그렇지요?

○전종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공정가격 이퀄 기준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전종덕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몇 페이지야, 뒤에 보면……

○전종덕 위원 57페이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 부분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정가격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예, 거기 기준가격이라는 표현에 공정가격이라는 내용을 달아 주시면 이 부분의 삭제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소위원장 이원택 이제 그렇게 좀…… 기준가격이라는 개념을 공정가격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 거니까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몇 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면 지금 기준가격……

○전종덕 위원 지금 15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임호선 위원 임미애 의원님 안의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바꾸면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7페이지에 기준가격 개념이 나옵니다. 임미애 의원님 안인데요, 기준가격……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시장의 평균가격을 고려해서 생산비라든가 수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이제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로 하자는 건데 이건 뭐 표현의 문제니까.

위원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렇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게, 공정하지도 않은 가격인데 공정가격을 여기다 붙이니까 이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런 데다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윤준병 위원 일단 여기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미애 의원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앞에 개념은 빼 버리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어떤 개념?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건 그냥 빼는 겁니다.

아까 27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27페이지 임미애 의원안을 보시면……

○윤준병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위원장 이원택 아, 그렇지요. 앞에 3항에 따라……

○윤준병 위원 그 내용 그대로 하고 거기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은 내용을 ‘공정가격’으로 하고 ‘평년, 직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이원택 왜냐하면 저희들이 목표가격, 기준가격, 공정가격 여러 개념들이 혼동돼서 표현됐는데 그렇게……

○윤준병 위원 좋아요. 앞에 정의는 빼고 이 내용으로 하면……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예.

○임호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다 그렇게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기준가격 대신에 다……

○윤준병 위원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만 쓰…… 지금 27쪽에 공정가격이라고 하는데 괄호 열고 해서 정의가 그 자체로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기준가격을 다 공정가격으로 일단……

○임미애 위원 그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하니까 사족 같지만, 기준가격은 절대로 공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마치 기준가격이 공정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데, 그 공정이란 단어를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데다 공정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일단 빼놓고 이후에 또 보완하자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전종덕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농안법, 아까 농안법도 설명 다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농안법은 1차 소위 논의안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차 소위안 중심으로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윤준병 위원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정희용 위원님하고 이만희 위원님이 나가셔서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 중 제22항, 29항은 계속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잠깐, 농안법에는 아까 이병진 의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1차 소위 논의 이후에 새로 들어온 것, 이것도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아까 이병진 의원님 안도 심사를 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0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 전체회의는 몇 시에 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전체회의는 8시로 공지가 됐습니다. 행정실에서 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림법안소위를 산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겠습니다.

(19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문금주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장 위원(2인)**

문대림 박덕흠

○**첨가 위원(1인)**

김선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직무대리 정아름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식량정책관 최명철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광호